

표지와 동일한 면지 사용

- 한·중 FTA 성과와 과제에 대한 조망-

Program

13:30 ~ 14:00 **등록**

14:00 ~ 14:20 **개회**

전체사회 : **오명호**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개회사 : **정찬모** 교수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환영사 : **임성호** 처장 (국회입법조사처)

축사 : **오선영** 교수 (송실대학교 경제통상연구소 소장)

포토세션

14:20 ~ 15:40 **제1세션**

좌장 : **성재호**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 한·중 FTA와 환경

발표자 : **박덕영**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정민정**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제2주제 : 한·중 FTA의 비관세장벽규정 분석

발표자 : **손기윤** 교수 (인천대 무역학부)

토론자 : **왕상한**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15:40 ~ 16:00 **Coffee Break**

16:00 ~ 17:50 **2세션**

좌장 : **서철원** 교수 (송실대학교 법학과)

제3주제 : 한·중 FTA 투자 챕터 분석: ‘井水不犯河水’의 정치경제학

발표자 : **김대원** 교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유희진** 교수 (안양대 국제통상유통학과)

제4주제 : 한·중 FTA와 나고야의정서

발표자 : **손지영** (이화여대 법과대학 박사과정)

토론자 : **김명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5주제 : 한·중 FTA의 주요쟁점과 대응과제

발표자 : **문병철**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토론자 : **김재준**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기획단)

17:50 ~ 18:00 **폐 회**

Contents

개회

개회사 정찬모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환영사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제1세션

제1주제 : 한·중 FTA와 환경 1

주제발표 : 박덕영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정민정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제2주제 : 한·중 FTA의 비관세장벽규정 분석 17

주제발표 : 손기윤 교수 (인천대 무역학부)

토 론 : 왕상한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세션

제3주제 : 한·중 FTA 투자 챕터 분석: ‘井水不犯河水’의 정치경제학 31

주제발표 : 김대원 교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유희진 교수 (안양대 국제통상유통학과)

제4주제 : 한·중 FTA와 나고야의정서 57

주제발표 : 손지영 (이화여대 법과대학 박사과정)

토 론 : 김명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5주제 : 한·중 FTA의 주요쟁점과 대응과제 87

주제발표 : 문병철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토 론 : 김재준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기획단)

개회사

정 찬 모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5월의 좋은 날에 국회입법조사처, 숭실대학교 경제통상연구소와 함께 한·중 FTA라는 우리 경제에 메가톤급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가 이 학술행사의 개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것은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더 이상 행정부의 일방적 주도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위시하여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와 공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의미 있는 행보라고 평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FTA 협상을 축구경기에 비유한다면, 한·미 FTA는 전·후반 다 뛰고 연장전 30분까지 거쳐서 타결한 협정문입니다. 이에 비해 한·중FTA는 전반만 뛰고 마무리한 협정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많은 협상 결과라는 것이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한중 양국의 협상가들도 그런 점을 인식하여서 협상문의 여러 곳에서 후속협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는 경기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반전 경기를 검토, 평가하고 후반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발표와 토론자,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참여는 한·중 FTA와 한국, 나아가 동북아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큰 임팩트를 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영사

임 성 호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기운에 신록이 더욱 푸르러지는 5월입니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되어 작년 11월 실질적인 타결을 이룩한 한·중 FTA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분야를 포함하여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숭실대학교 경제통상연구소,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한국의 통상 관련 싱크탱크로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한·중 FTA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3개 기관은 공동으로 「한·중 FTA 성과와 과제에 대한 조망: 13억 대륙이 제공하는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세미나는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여 한·중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중 FTA상의 “환경챕터,” “비관세장벽규정,” “투자챕터,” “나고야의정서와의 관계” 및 “국회의 시각에서 본 한·중 FTA의 주요쟁점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학계, 정부, 국책연구소 전문가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중 FTA와 관련하여 산학연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한·중 FTA가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 마련의 발판이 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중 FTA 성과와 과제에 대한 조망

제 1 주제

한·중 FTA와 환경

주제발표 : 박덕영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정민정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중 FTA와 환경



박덕영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 I. 서론: 한·미 FTA 및 한·EU FTA상 환경보호
- II. 한·중 FTA 이전 중국의 FTA상 환경보호
- III. 중국의 환경법제
- IV. 한·중 FTA 환경관련 주요내용
 - I. 서문
 - II.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 III. 제6장: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 IV. 제8장: 서비스무역
 - V. 제16장: 환경과 무역
- V. 시사점
- VI. 향후대책
- VII. 연세대학교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I. 한·미 FTA 및 한·EU FTA상 환경보호

한·미 FTA의 경우



- 서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 및 “환경보호 및 보전”에 합치하는 방식의 협정 이행 희망
- 별도의 **환경챕터** 포함 (제20장)
- 환경챕터에서 각 당사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고 **자국 환경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
- 양 당사국이 동시에 비준한 **다자간 환경협정** 준수
- 환경챕터에서 **대중의 참여기회** 명시 (자국 환경법 위반여부 조사 요청 등)



한미 FTA의 환경챕터 이행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한미 환경협의회(EAC) - 2013.03.26 미국 워싱턴DC

I. 한·미 FTA 및 한·EU FTA상 환경보호

한·EU FTA의 경우



- 서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신념 재확인 및 “**환경과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전**” 언급
-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챕터 포함 (제13장)
- 각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자간환경협정**의 효과적인 이행 약속 재확인
-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 패널**을 통한 환경관련 분쟁해결 규정

*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개최

- 1차: 2012. 4. 브뤼셀
- 2차: 2013. 9. 서울

II. 한·중 FTA 이전 중국의 FTA상 환경보호

중국의 FTA 환경관련 규정

- 대체적으로 전문, 환경협력 관련 조항, 무역조치에 대한 환경적 예외조항을 두는 수준으로 이루어짐
- 중국에서도 에너지협력의 강화 등 환경문제 관련 문제들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환경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확대되고 있음

FTA	발효	환경관련 규정				환경 챕터	환경 보호 조항
		두문	일반예외	SPS조항	협력		
중국-ASEAN FTA	2002.11.04	○	○	○			
중국-홍콩 CEPA	2004.01.01						
중국-마카오 CEPA	2004.01.01						
중국-칠레 FTA	2006.10.01		○	○	○		
중국-파키스탄 FTA	2007.07.01	○		○			
중국-뉴질랜드 FTA	2008.10.01	○	○	○	○		
중국-싱가포르 FTA	2009.01.01		○	○	○		
중국-페루 FTA	2010.03.01	○	○	○	○		
중국-대만 ECFA	2010.09.12						
중국-코스타리카 FTA	2011.08.01		○	○	○		
중국-아이슬란드	2014.07.01	○	○	○			○
중국-스위스	2014.07.01	○	○	○		○	

중국-스위스 FTA

- 서문에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언급
- 협정문 제7장에서 위생과 식물위생조치를 규정

조항	제목	조항	제목
제12.1조	배경과 목표(Context and Objectives)	제12.5조	양자간 협력(Bilateral Cooperation)
제12.2조	다자간 환경협정과 환경원칙(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Environmental Principles)	제12.6조	자원과 자금의 배정(Resources and Financial Arrangements)
제12.3조	환경에 유리한 상품과 서비스무역을 촉진(Promotion of the Dissemination of Goods and Services Favoring the Environment)	제12.7조	실행과 협상(Implementation and Consultation)
제12.4조	국제포럼협력(Cooperation in International Fora)	제12.8조	심의(Review)

그 외 중국이 체결한 FTA (1/2)



중-칠레 <2006.10.01>

- FTA 제7장에서 위생과 생물위생관련 조항
- 제12장 예외 제99조 일반예외에서 GATT 20조를 본 협정의 일부분이라고 규정
- 협정문 제108조에서 노동, 사회보장과 환경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환경방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규정



중-파키스탄 <2007.07.01>

- 서문에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언급
- FTA 제6장에서 위생과 식물위생조치를 규정



중-뉴질랜드 <2008.10.01>

- 서문에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언급
- 본문 제7장에서 위생과 식물위생조치를 규정
- 제96조 규정협력 제1항 c호와 제3항에서 환경, 건강, 안전 관련 내용을 언급
- 협정문 제200조 일반예외 제2항에 생명과 안전 및 환경에 관련된 GATT 제20조 b항과 g항은 협정문에 포함



중-싱가포르 <2009.01.01>

- FTA 제7장에서 기술장벽과 위생과 식물위생조치를 같이 규정
- 제87조 2항에서는 생태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로 환경보호와 자원과 에너지 절약 등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규정
- 제13장 예외 제105조 일반예외에서 GATT 제20조를 본 협정의 일부분이라고 규정하고 별도로 서비스무역에서의 동식물 건강에 관련한 일반적인 예외를 규정

그 외 중국이 체결한 FTA (2/2)



- 서문에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언급
- 협정문 제6장에서 위생과 생물위생조치를 규정
- 협정문 제7장 기술무역장벽의 제99조 1항 b호에서 건강과 환경보호를 언급
- 협정문 제12장 협력 제161조, 제162조는 환경에 관한 협력은 규정
- 협정문 제16장 예외 제193조 일반예외에서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GATT 제20조 b항과 GATS 제14조 b항은 이 협정의 일부분으로 원용



- 협정문 제11장 무역관계에 관한 협력, 강화와 확대
- 제123조 농업협력 제2항 b호, c호, d호, e호, l호, m호에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언급
- GATS 제14조 b항은 이 협정의 일부분으로 원용



- 서문에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언급.
- 협정문 제11조 일반예외에서는 이 협정은 GATT 제20조 및 그에 대한 설명을 이 협정의 일부분으로 원용된다 라고 규정
- 협정문 제19조에서는 9개 항을 두어 위생과 식물위생조치를 규정
- 협정문 제96조는 노동과 환경보호를 제목으로 제2항에서 환경문제를 2005년 5월에 체결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환경보호총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환경부 환경합작 양해'에 따라 실시

중국이 체결한 FTA 환경관련 특징

중국의 환경보호 수준이 낮은 편이고, 따라서 환경서비스 개방수준도 낮음

자유무역에 환경관련 내용을 추가함에 있어 중국 본토의 환경보호 유인보다는, 무역 상대방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 환경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임

중국은 발전중인 개발도상국이므로, FTA를 체결하는 목적은 환경을 우선 순으로 하기보다 경제와 정치적인 목적에 치중함

FTA상 규정되고 있는 환경보호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III. 중국의 환경법제



* 최근 2015 친환경보호법에 따른 중국 내 생태도시 및 신도시화 추진으로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IV. 한·중 FTA 환경관련 주요내용 (1/2)

서문, 제5장, 제6장 및 제8장

서문

Preamble

-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및 환경 보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구성요소이고, 밀접한 경제 동반자 관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며...
- MINDFUL that economic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interdependent and mutually reinforcing** compon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at closer economic partnership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CHAPTER 5: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제1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양 당사국의 영역 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제6장: 기술에 관한 무역장벽

CHAPTER 6: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제6.7조: 투명성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세계무역기구 중앙통지문등록처 통지 후 최소 6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제8장: 서비스 무역

CHAPTER 8: TRADE IN SERVICES

부속서 8-가 구체적 약속

환경서비스에 대한 한·중 양허표 비교

분류	대한민국	중국
하수처리서비스	산업폐수만 부분개방	전체 개방
폐기물처리서비스	산언폐기물만 부분개방	전체 개방
위생서비스 (도로청소, 제설 등)	미개방	개방
배기가스(대기) 정화서비스	개방	개방
소음저감서비스	개방	개방
자연 및 경관 보전서비스	미개방	합자조건으로 개방
기타 환경서비스	환경영향평가만 개방	합자조건으로 기타 환경서비스 전체 개방

*출처: 환경부 "WTO/FTA 협상 동향" (2014.12.16)

IV. 한·중 FTA 환경관련 주요내용 (2/2)

제16장: 환경과 무역

제16.1조: 배경 및 목적

Article 16.1: Context and Objectives

- 「1972년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1992년 의제 21」,
「2002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2012년 리우+20의 결과문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 등
환경관련 국제사회의 노력을 상기시킴
-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의 경제발전 재확인
-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고

제16.2조: 적용범위

Article 16.2: Scope

-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양 당사국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법과 규정 포함

제16.3조: 보호 수준

Article 16.3: Levels of Protection

- 환경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주권적 권리** 재확인
- 각국의 **환경보호** 수준 개선 노력

제16.4조: 다자간환경협정

Article 16.4: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대한민국과 중국 모두 가입한 다자간환경협정

* 대한민국만 가입한 다자간환경협정

- 다자간환경협정(MEA) 역할의 중요성 인정
-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이 될 다자간환경협정 **협상에서의 협력** 약속
-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다자간환경협정의 **효과적인 이행** 약속

바젤 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CBD),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교토 의정서, 수문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서명), 몬트리올 의정서, 로테르담 협약, 스톡홀름 협약, UN 사막화 방지 협약(UNCCD),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 협약(UNFCCC), 비엔나 협약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ABS)

제16.5조: 법과 규정을 포함한 환경조치의 집행

Article 16.5: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Measures Including Laws and Regulations

- 자국의 법과 규정을 포함한 **환경조치**의 효과적인 집행 보장
- 자국의 환경법, 규정, 정책, 관행 등을 통해 부여된 환경보호 수준을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방식의 부적절함** 인정
- 한쪽 당사국의 당국은 **다른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환경조치 불가

제16.6조: 환경영향

Article 16.6: Environmental Impact

- 협정 이행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 환경영향 검토 **기법 및 방법**에 관한 정보 공유

제16.7조: 양자협력

Article 16.7: Bilateral Cooperation

- **환경분야**의 협력 중요성 인정, 협력활동 강화 약속
- 협력분야에 관한 **예시적 목록** 열거
 - 환경친화제품을 포함한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보급 촉진
 - 환경기술 개발에 관한 협력과 환경산업의 증진
 -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과 조치에 관한 정보교환
 - 환경전문가 교류를 포함한 환경 두뇌집단 협력 메커니즘 구축
 - 환경분야의 워크샵, 세미나, 박람회 및 전시회를 포함한 역량 구축
 - 각국에서 시범지대로서 환경산업단지 조성
 -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
- 2014년 7월 3일 서명된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 **대기오염 관련 협력 강화**

제16.8조: 제도적 및 재정적 약정
Article 16.8: Institutional and Financial Arrangement

- 환경챕터 이행을 위한 접촉선 역할을 하는 사무소 지정
- 접촉선을 통한 **협의** 요청가능
- **환경과 무역에 관한 위원회** 설치
- 환경챕터 **이행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합
- 환경챕터 이행을 위해 충분하고 지속적인 **재정적 자원** 필요성 확인

제16.9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Article 16.9: Non-Application of Dispute Settlement

- 환경챕터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제20장(분쟁해결) 절차 이용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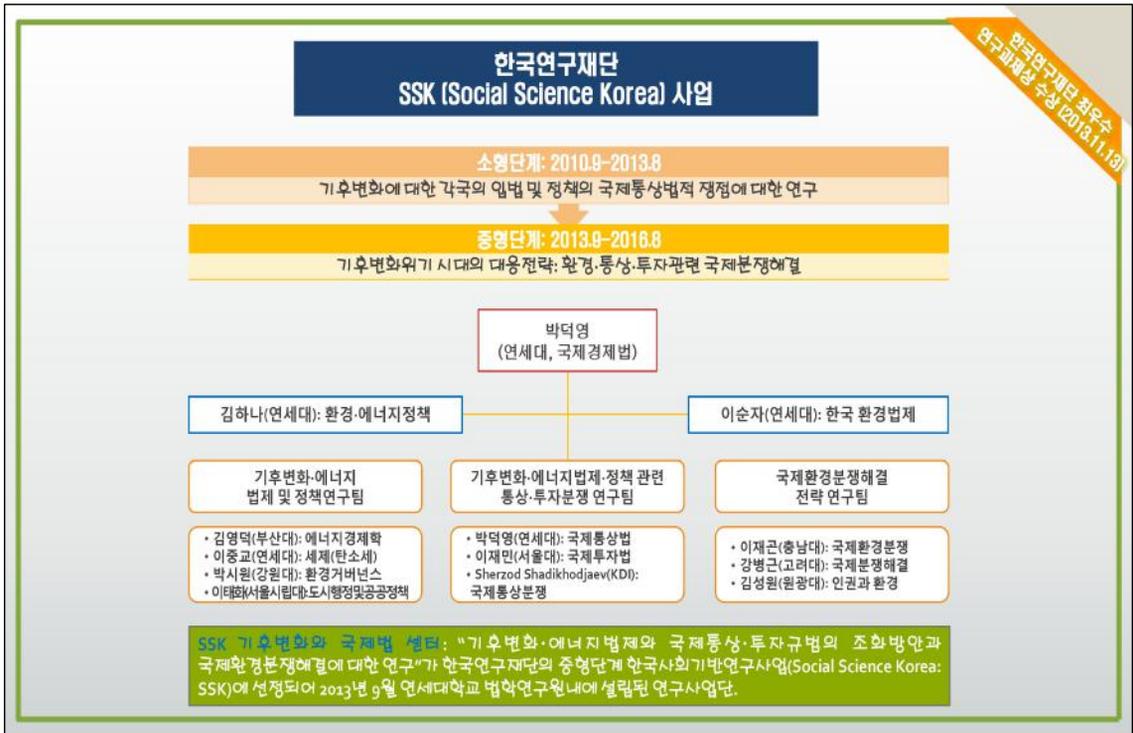
V. 시사점

-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서문 등에서 확인)
- 중국 입장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한 최초의 FTA
(중-스위스 FTA 환경챕터는 권고 수준)
- 정부의 환경조치를 비롯하여 관련 **법과 규정**까지 환경챕터 적용범위에 포함
- **환경서비스** 관련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 기대

VI. 향후대책

- 중국의 지식재산권 및 TBT 관련 조치 예의주시
 - 중국의 협정상 환경관련 의무 이행 감독방안 확인
 - 협정에 따라 환경과 무역에 관한 위원회 설치 (산자부, 환경부)
 - 전문가자문 등을 위한 한·중 FTA 환경 포럼 개최
 - 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위해성 평가 실시
 - 우리기업들을 위해 원산지 증명 발급 관련 정부지원 확대
 - 국내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 중국의 비관세장벽(NTB) 등
- * 한·중 FTA가 정부만의 정책으로 끝나지 않아야 함

VII.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소형단계 연구실적 (2010.9 - 2013.8)

논문: 21 / 저역서: 5







출간예정도서 (2015)

국제환경법 / 기후변화 국제협약 해설
중국의 환경외교 / 일본의 환경외교
국제환경분쟁 사례연구 / 무역과 환경 분쟁 사례연구
탄소국경조치와 WTO / 기후변화와 법이야기
국제투자법과 환경 / 에너지투자분쟁 사례연구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중형단계 연구실적 (2013.9 - 2014.3)

논문: 10 / 저역서: 2




동아시아의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문제에 대한 국제세미나

일시: 5월 29-30일 (금, 토요일)

장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세미나실

-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전문가 발표 및 신기후체제에 대한 토론



감사합니다

박덕영 (lawpd@yonsei.ac.kr)

한·중 FTA 성과와 과제에 대한 조망

제 2 주제

한·중 FTA의 비관세장벽규정 분석

주제발표 : 손기윤 교수 (인천대 무역학부)

토 론 : 왕상한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중 FTA의 비관세장벽규정 분석

손기윤* 교수 (인천대 무역학부)

I. 머리말

GATT 체제가 출범한 이후 회원국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다자통상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핵심의제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관세장벽이 크게 줄어들어서 국가별 평균관세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에 비관세장벽관세장벽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비관세장벽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인식한 GATT 회원국들은 1960년대 이후에 진행된 다자통상협상에서 비관세장벽을 규제하기 위한 규범의 도입을 논의하였다.¹⁾

WTO 회원국들은 다양한 비관세장벽관련 WTO협정들에 근거하여 국내조치들을 도입하여 수입품들에 적용하여 왔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비관세장벽관련 협정들의 적용과 관련된 WTO분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한편 1990년대 후반이후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들이 비관세장벽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중 FTA도 예외가 아니다. 지역무역협정별로 비관세장벽규정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인식할 때 향후 한중 양자무역의 원활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한-중 FTA의 비관세장벽규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예상되는 이슈들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학문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본 논문은 한-중 FTA의 비관세장벽규정들 중에서 동식물검역조치규정과 기술적무역장벽규정에

*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kysohn@inu.ac.kr.

1) 케네디라운드협상에서 반덤핑협정(Code)을 논의하여 도입하였다. 그 이후에 진행된 도쿄라운드협상에서는 더 많은 분야의 비관세장벽에 관한 규범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로 개정된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에 합의하였다. 도쿄라운드협상에서 기술적무역장벽규범도 논의하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1987년 하반기에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에 관한 규범을 보다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는데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뿐만 아니라 동식물검역협정(SPS)와 기술적무역장벽협정(TBT)의 제정에 합의하였다. 케네디라운드와 도쿄라운드에서 합의한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은 서명한 회원국에게만 적용되는 복수국간협정인 반면에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한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동식물검역협정(이하, 'WTO SPS협정') 및 기술적무역장벽협정(이하, 'WTO TBT협정')은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된다.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²⁾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II절에서 한-중 FTA의 비관세장벽규정들을 WTO SPS협정과 TBT협정과 비교하며 분석한다. 그리고 제III절에서 한-중 FTA 비관세장벽규정들을 중국이 기체결한 FTA의 비관세장벽규정과 연계하면서 한-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IV절에서 향후 논의될 수 있는 이슈들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한다.

II. 한-중 FTA 비관세장벽규정

1. 동식물검역조치규정

(1) 목적과 적용범위

한-중 FTA는 동식물검역조치규정의 목적으로 네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 양 당사국 역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동식물검역조치가 양 당사국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둘째, 각 당사국의 동식물검역조치의 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셋째, 동식물검역조치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마지막 목적은 WTO SPS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는 것이다.³⁾

한-중 FTA 동식물검역조치규정의 적용대상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동식물검역조치들이다.⁴⁾⁵⁾ 또한 동 FTA의 동식물검역조치규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WTO SPS협정을 양 당사국에 적용하며 동 협정이 동식물검역조치규정에 통합되어 일부가 된다.⁶⁾ 한편 한국과 중국은 동식물검역조치규정에 별도의 정의조항을 두지 않는 대신에 WTO SPS협정의 부속서 A에 서술된 정의를⁷⁾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⁸⁾

2) 반덤핑관세,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들도 비관세장벽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동식물검역조치규정과 기술적무역장벽규정에 한정한다.

3) 한-중 FTA 제5.1조 제(a)~(d)항.

4) 한-중 FTA 제5.2조 제1항.

5) 동 규정은 WTO SPS협정 제1.1조와 유사하다.

6) 한-중 FTA 제5.3조.

7) WTO SPS협정의 부속서 A는 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SPS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물검역조치나 식물검역조치를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생산과정과 생산방식(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과 식품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포장과 표시의무사항(packaging and labelling

(2) 기술협력

양국은 양자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 당사국의 규제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동식물검역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위한 기회를 모색하자고 합의하였다.⁹⁾ 또한 양국은 동식물검역조치 이슈들과 관련하여 협력하는 것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기술협력은 상호 합의된 조건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양국은 기술협력 분야를 한정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다섯 가지 분야를 명시하였다.¹⁰⁾ 첫 번째 분야는 국제표준 및 국내 동식물검역조치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협력과 경험에 대한 교환을 강화하는 것이며 두 번째 분야는 위험분석방법론, 질병과 병충해 관리 방법, 실험실 시험 기술 및 국내규정에 대한 정보교환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국은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WTO 동식물검역조치 문의처들이 각자 쌓아온 경험들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 동물 질병과 식물 병충해 관리에 대한 양국의 역량과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담당기관의 공무원들의 교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일부 분야에서의¹¹⁾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상기 기술협력규정이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의 결과를 상대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개선된 동식물검역조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동식물검역조치위원회

양국은 동식물검역조치 관련 협력과 협의를 증진하고 양자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식물검역조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¹²⁾ 동 위원회는

requirements)도 동물검역조치나 식물검역조치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조화(harmonization)의 정의를, 제3항은 분야별 국제표준, 국제지침 및 국제권고의 정의를, 제4항은 위험평가의 정의를, 제5항은 적절한 동식물검역보호 수준(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의 정의를, 제6항은 병충해 자유지역(pest- or disease-free area)의 정의를 그리고 제7항은 낮은 수준의 병충해 발생지역(area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의 정의를 서술하고 있다.

8) 한-중 FTA 제5.2조 제2항.

9) 한-중 FTA 제5.4조 제1항.

10) 한-중 FTA 제5.4조 제2항 제(a)~(e)호.

11)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분야는 (i) 동물과 식물의 질병과 병해충 조사, (ii) 동물과 식물의 질병과 병해충의 예방과 관리, (iii)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검출 방법 및 (iv) 유해물질과 농화학 및 수의약품 잔여물의 조사 및 관리와 그 밖의 식품안전문제 분야이다. (제5.4조 제2항 제(e)호 (i)~(iv))

12) 한-중 FTA 제5.5조 제1~2항.

당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최소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¹³⁾ 한국측 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이며 중국측 주관기관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그 승계기관이다¹⁴⁾.

동식물검역조치위원회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¹⁵⁾ 특기할만한 기능으로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양자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동식물검역조치의 개발이나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다.¹⁶⁾ 둘째, 동식물검역요건의 불합치가 지대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또는 반복되는 경우에 양국 주관기관들이 적기에 의견을 교환한다.¹⁷⁾ 셋째, 한 당사국이 보기에 다른 당사국의 동식물검역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이거나 위장된 무역제한조치인 방식으로 적용된 가능성이 있거나 적용되어 온 경우에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하다면 양국이 기술적 협의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¹⁸⁾ 끝으로 WTO SPS위원회, Codex 위원회(CAC), 국제수역사무국(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및 식품안전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한 국제포럼과 지역포럼의 회의와 관련된 이슈와 입장 및 의제를 조율하여야 한다.¹⁹⁾

동식물검역위원회가 원활하게 역할을 하게 되면 상대국 상품에 대한 WTO SPS협정에 불합치하는 동식물검역조치의 적용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동식물검역조치관련 국제회의에서 실질적인 공조가 이뤄지게 되면 양국 국익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술적무역장벽규정

한-중 FTA의 기술적무역장벽규정은 WTO TBT협정의 핵심사항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 내용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13) 한-중 FTA 제 5.5조 제5항.

14) 한-중 FTA 제5.5조 제7항.

15) 한-중 FTA 제5.5조 제3항.

16) 한-중 FTA 제5.5조 제3항 제(c)호.

17) 한-중 FTA 제5.5조 제3항 제(d)호.

18) 한-중 FTA 제5.5조 제3항 제(e)호.

19) 한-중 FTA 제5.5조 제3항 제(i)호.

(1) 적용범위 등

한-중 FTA 기술적무역장벽규정의 적용대상은 중앙정부기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이다.²⁰⁾ 그러나 동 규정은 두 가지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데 하나는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이나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구매규격이며 다른 하나는 WTO SPS협정의 부속서 A에서 정의된 동식물검역조치이다.²¹⁾

한편 지방정부가 도입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지방정부의 조치들이 한-중 FTA 기술적무역장벽규정에 합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2) 기술규정

(a) 국제표준

기술규정을 제정할 때에 관련 국제표준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각 당사국은 그러한 국제표준이나 국제표준의 관련 부분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이나 관련부분을 자국의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하여야 한다.²²⁾ 이 조항은 WTO TBT협정 제 2.4조를 반영한 것인데 국제표준의 비효과성과 부적절성 여부의 판정시 활용할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 양국간 기술적무역장벽 완화를 위하여 적용가능한 판정기준의 개발 등에 대하여 향후 이행관련 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WTO TBT협정 제2.4조에서 의미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 각 당사국은 WTO TBT위원회의 결정(Decision)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통신연합(ITU) 및 Codex 위원회(CAC)에서 개발한 것들을 포함하며 이들 이외의 국제표준도 적용할 수 있다.²³⁾ 상기 조항은 WTO TBT위원회의 결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이행관련 협의시 적용할 TBT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 한-중 FTA 제6.2조 제1항.

21) 한-중 FTA 제6.2조 제2항 제(a)~(b)호.

22) 한-중 FTA 제6.4조 제3항.

23) 한-중 FTA 제6.4조 제4항.

(b) 동등성

한-중 FTA 기술적무역장벽규정은 WTO TBT협정과 달리 동등성에 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각 당사국은 상대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이 추구하는 목적들을 적절하게 충족한다면 상대국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²⁴⁾ 이는 WTO TBT협정 제2.7조와 동일하다.

강조할 사항은 상대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적절하게 충족하더라도 단지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반드시 동등성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국간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FTA의 주요 목적임을 감안할 때 향후 이행관련 논의시 상대국의 기술규정이 자국 규정의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동등한 기술규정으로 인정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무역장벽규정은 동등성판정과 관련하여 WTO TBT협정에 없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 당사국이 상대국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국이 요청하면 비인정결정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²⁵⁾

(3) 표준

우선 양국의 표준기관들이 지켜야할 기본방향과 관련된 각국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다. 각 당사국은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자국의 표준기관이 WTO TBT협정 부속서 3을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²⁶⁾ 이는 WTO TBT협정 제4.1조의 핵심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TBT협정 제4.1조는 “회원국들에게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회원국들이 취하여야 할 합리적인 조치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한-중 FTA의 관련 조항은 단지 “합리적인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FTA상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조치의 범위가 넓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양국 표준기관 사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양국은 자국 영역내의 한 개 이상의 표준기관이 상대국의 한 개 이상의 표준기관과 협력하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최소한 표준에 대한 정보와 경험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²⁷⁾

24) 한-중 FTA 제6.5조 제1항.

25) 한-중 FTA 제6.5조 제2항.

26) 한-중 FTA 제6.4조 제1항.

(4) 적합성평가절차

한-중 FTA의 적합성평가절차규정은 상대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상대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특정한 기술규정에 관한 결과의 수용, 상대국에 소재하는 적합성평가기관에 적합성평가기관으로서 자격 인정, 상대국에 소재하는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상대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 인정, 상대국의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자발적 약정 체결 및 수입국이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신뢰 등을 채택할 수 있다.²⁸⁾

상대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양국은 적합성평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장려하며²⁹⁾ 자국산 동종상품의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상대국에게 적합성평가절차를 적용한다³⁰⁾. 또한 상대국이 적합성평가절차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을 위한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³¹⁾ 적합성평가절차 처리기간과 비용을 적합성평가절차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³²⁾.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된 국제표준의 적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적합성평가절차를 제정할 때에 관련 국제표준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각 당사국은 그러한 국제표준이나 국제표준의 관련 부분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이나 관련부분을 자국의 적합성평가절차의 기초로 사용하여야 한다.³³⁾

또한 WTO TBT협정 제2.4조에서 의미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 각 당사국은 WTO TBT위원회의 결정(Decision)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통신연합(ITU) 및 Codex 위원회(CAC)에서 개발한 것들을 포함하며 이들 이외의 국제표준도 적용할 수 있다.³⁴⁾ 기술규정의 국제표준과 마찬가지로 향후 이행관련 협의시 동 조항에 해당하는 TBT위원회의 결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한-중 FTA 제6.4조 제2항.

28) 한-중 FTA 제6.6조 제1항 제(a)~(i)항.

29) 한-중 FTA 제6.6조 제2항.

30) 한-중 FTA 제6.6조 제3항.

31) 한-중 FTA 제6.6조 제4항. 동 조항은 WTO TBT협정 제6.3조와 유사한 면이 있다.

32) 한-중 FTA 제6.6조 제5항.

33) 한-중 FTA 제6.4조 제3항.

34) 한-중 FTA 제6.4조 제4항.

(5) 기타

기술적무역장벽규정은 FTA의 특징을 살린 투명성과 협력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국은 안전, 건강, 환경보호나 국가안보상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WTO 중앙통지등록처에 통보한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절차 초안에 대하여 상대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허용하여야 하는데 상기 통보 후 최소 60일을 부여한다.³⁵⁾ 그리고 양국은 기술규정 초안을 통보 후 의견제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된 상대국의 의견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상대국이 요청하며 의견에 대하여 답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³⁶⁾ 협력방안에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하여 조언하거나 기술기준을 제공하는 것과 적합성평가기관의 자격부여를 위한 인정의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³⁷⁾

한-중 FTA 기술적무역장벽규정 중에서 관심을 가질 사항은 소비자제품안전조항과 표시와 라벨링 조항이다. 소비자제품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국은 관련 규제체계, 안전사고의 분석, 유해 정보, 제품 금지, 제품 리콜 및 시장감시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³⁸⁾ 또한 모범규제관해, 제품 안전감시를 포함한 위험관련원칙의 개발과 이행 및 규제집행을 협력하기로 하였다³⁹⁾.

표시와 라벨링과 관련하여 양국은 WTO TBT협정 제2.2조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표시나 라벨링을 포함한 기술규정들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하거나 채택하거나 또는 적용하여야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규정들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⁴⁰⁾

Ⅲ.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

한-중 FTA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각 규정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비관세무역장벽규정의 정책과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중국이 체결한 FTA의 일부 규정들이

35) 한-중 FTA 제6.7조 제1항.

36) 한-중 FTA 제6.7조 제3항.

37) 한-중 FTA 제6.8조 제2항.

38) 한-중 FTA 제6.9조 제2항.

39) 한-중 FTA 제6.9조 제3항.

40) 한-중 FTA 제6.11조 제2항.

유익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들과 연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동식물검역조치규정

(1) 동등성

한-중 FTA 동식물검역조치규정은 상대국 동식물검역조치의 동등성 인정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동식물검역조치의 동등성 인정과 관련하여 WTO SPS협정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일부 중국 FTA 동식물검역조치규정은 동등성 인정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이행협이나 타국과의 FTA협상을 위하여 검토할 가치가 있다.

중국-뉴질랜드 FTA에 따르면 양국은 동식물검역조치의 동등성여부 판정시 적용할 원칙과 기준 및 절차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원칙과 기준 및 절차를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동등성여부 판정시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⁴¹⁾

중국-페루 FTA는 동등성 인정과 관련된 신속처리절차 개발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필요한 경우에 동등성인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상기 원칙과 기준 및 절차의 개발시 관련 국제기구 및 WTO SPS위원회에서 개발한 관련 절차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⁴²⁾

중국-코스타리카 FTA는 WTO SPS협정 제4조의 내용을 포함시킨 뒤에 동등성 판정시 고려할 기준들을 명시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특정한 사안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동등성 판정시 관련 국제기구들의 국제표준과 가이드라인 및 권고 그리고 WTO SPS위원회의 결정들을 고려하여야 한다.⁴³⁾

끝으로 상대국 동식물검역조치의 동등성 인정과 관련하여 WTO SPS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중국-페루 FTA와 중국-코스타리카 FTA에서 단지 SPS위원회의 결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4년에 채택한 일명 “동등성 결정”을⁴⁴⁾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 결정의 적용여부를 향후 이행협이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41) 중국-뉴질랜드 FTA 제81조 제4항.

42) 중국-페루 FTA 제85조 제2항.

43) 중국-코스타리카 FTA 제62조 제2항. 동 조항은 “should”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표준과 가이드라인 및 권고 그리고 WTO SPS위원회 결정들을 고려해야 하는 의무의 구속력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44) G/SPS/19(2001, 10,24)와 그 이후 개정된 G/SPS/19/Rev.2(2004.7.23.). 동 결정의 법적구속력 여부에 대하여 Scott(2007, 165)은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Van den Bossche 등(2013, 933)은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특정지역의 동식물검역조건

WTO SPS협정 제6조는 WTO 회원국들이 동식물검역조치에 병충해로부터 자유롭거나 병충해 발병률이 낮은 특정지역(들)의 동식물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뒤 그와 관련된 원칙과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FTA는 상기 제6조에 근거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한-중 FTA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이행협의를 양국간 무역의 원활화를 위하여 지역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체결한 FTA 중 다섯 개 FTA가 특정지역의 동식물검역조건(이하, ‘지역 조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⁴⁵⁾ 중국-뉴질랜드 FTA가 다른 FTA에 비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지역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기할 사항은 양국이 지역조건 인정여부 판정시 적용할 원칙과 기준 및 절차를 공동으로 개발하며 동 결과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다는 점이다.⁴⁶⁾ 그리고 중국-스위스 FTA는 지역조건 인정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WTO SPS위원회에서 채택한 제6조의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G/SPS/48)과 OIE와 IPPC에서 개발한 관련 표준들을 유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⁴⁷⁾

동식물검역조치의 지역조건이 실제로 시행되었거나 논의된 사례가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였을 때 멕시코는 기존의 국가별 금지체계를 변경하여 텍사스주 11개 카운티로부터 수입되는 가금류 제품만 금지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중국은 AI가 발생하였을 때 미국 검역당국에 AI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의 닭고기와 닭고기류 수출의 허용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⁴⁸⁾ 한편 한국은 지난 2013년 9월에 후쿠시마 인근지역의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는데 이는 일종의 지역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술적무역장벽규정

(1) 국제표준

WTO TBT협정 제2.4조~제2.6조는 기술규정의 국제표준을 그리고 제5.4조~제5.5조는 기술적 합성평가절차의 국제표준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 기술적무역장벽규정도 특정한 국제기구의 표준과 WTO TBT위원회 결정을 기초로 기술규정이나 기술적합성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WTO TBT위원회의 결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이행협의를 구체화할

45) 뉴질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페루 및 코스타리카.

46) 중국-뉴질랜드 FTA 제80조 제2항.

47) 중국-스위스 FTA 제7.5조 제2항.

48) Scott(2007, 179-180).

필요가 있다.

중국이 체결한 일부 FTA에서는 WTO TBT위원회에서 채택한 ‘관련 국제표준’ 여부 판단시 적용할 원칙에 관한 결정들인 G/TBT/1/Rev.7, G/TBT/1/Rev.8 및 G/TBT/1/Rev.9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⁴⁹⁾

(2) 동등성

WTO TBT협정 제2.7조는 회원국 기술규정의 동등성과 관련하여 수입국 기술규정이 추구하는 목적들이 적절히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동등성으로 인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도 상기 TBT협정 제2.7조를 반영하고 있으나⁵⁰⁾ FTA 회원국으로서 동등성 인정과 관련하여 누릴 수 있는 우대조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중국-싱가포르 FTA의 기술규정 동등성 조항은 구체성은 없으나 FTA 회원국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익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싱가포르 FTA는 각국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과 관련하여 우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favourable consideration)고 명시하고 있다.⁵¹⁾ 따라서 이런 ‘우대적인 고려’는 향후 이행협약시 도출된 구체적인 결과를 적용할 때에 최혜국대우원칙 위반 소지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IV. 맺음말

앞에서 한-중 FTA 비관세무역장벽규정을 관련 WTO 협정들과 비교하여 분석 한 뒤에 중국 FTA의 관련 조항들과 연계하여 향후 이행협약시 논의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향후 비관세장벽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거가 양국간에 논의가 필요한 이슈로서 유전자변형식품(GMO)과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적용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더불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49) G/TBT/1/Rev.7은 중국-칠레 FTA(제63조 제2항)에, G/TBT/1/Rev.8는 중국-페루 FTA(제96조 제2항)에 그리고 G/TBT/1/Rev.9는 중국-코스타리카 FTA(제73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50) 한-중 FTA 제6.5조 제1항.

51) 중국-싱가포르 FTA 제53조 제1항.

참고문헌

- Mavroidis, M. Petros, 2012, *Trade in Goods*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ott, Joanne, 2007, *The WTO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den Bossche, Peter and Warner Zdouc, 2013, *The Law and Poli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ext, Cases and Materials*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한·중 FTA 성과와 과제에 대한 조망

제 3 주제

한·중 FTA 투자 챕터 분석: ‘井水不犯河水’의 정치경제학

주제발표 : 김대원 교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유희진 교수 (안양대 국제통상유통학과)

한·중 FTA 투자 챕터 분석: ‘井水不犯河水’¹⁾의 정치경제학

A Comparative Study of Investment Chapter in Korea–China FTA

김대원* 교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I. 서론

2004년 이후 진행되어왔던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한중 FTA’)이 2015년 2월 25일 가서명되었다. 한편으로 최근 2014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간 공동성명에서 양국간의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FTA 체결 노력을 언급한 점에 비추어보면 협상의 최종 결과는 한국측에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²⁾ 특히, 투자분야에서 한국·중국·일본 3국투자협정 플러스³⁾ 또는 한국-미국 FTA(‘KORUS’) 수준의 높은 투자자유화를 목표로 했던 한국으로서는 2007년 한국-중국투자협정(‘한중투자협정’) 수준의 제한적 투자자유화에 거친 한중 FTA 결과가 다소 실망스러운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후술하듯이 지금까지 중국의 국제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y: ‘IIT’) 체결 관행이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의 틀에서 관련국과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PTA’)내의 투자협정(Preferential Trade Investment Agreement:‘PTIA’)을 타결시킨 점이나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영기업에 관한 개혁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이어서 설립전투자까지 포함하는 내국민대우와 같은 전면적 투자자유화를 중국이 수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측 못할 결과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한중 FTA 12장 투자챕터(‘한중투자챕터’)의⁴⁾ 비교법적 분석 및 그 평가를 목표로 한다. 한중투자챕터의 비교법적 분석을 위해 2장과 3장에서는 ① 200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무역과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Dr. Ius.). 본고는 2015년 5월 15일 국제경제법학회 발표용 초고입니다.

1) ‘각자 한계를 정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중국식 관용어구로 1997년 홍콩의 중국 본토 반환 당시 중국의 장쩌민 주석이 일국양제(一國兩制)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최근예가 있다.

2) 예를 들어 이코노미스트 1276호 ‘Cover Story’ (2015.03.16.) 참조.

3) 산업자원통상부, 한중 FTA 설명자료 (2014.11), p. 1.

4) 협정문 열람은 <http://www.fta.go.kr/cn/doc/1/> 참조.

투자의 혼합적 규범체계로서의 PTIA의 의의와 ②중국이 체결한 BIT와 PTIA를 포함하는 국제투자협정(IIT)과 ③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국제투자협정, 특히 2007년 개정 한중투자보장협정(‘한중투자협정’)과 2012년 한중일 투자보장협정(‘3국투자협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⁵⁾ 분석 및 평가를 위해서는 현대투자규범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논의되는 ‘투자자유화를 포함하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에 관한 비차별의무’, ‘최소기준대우’, ‘이행요건’, ‘투명성’, ‘인권이나 환경 등에 관한 비경제적 요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를 포함한 분쟁해결제도’ 등의 7가지 요소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최종적 평가는 ① 중국의 BIT 정책과 PTIA 정책의 관계는 어떠하며 그 맥락에서 ‘한중투자챕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② 단일한 투자만에 관한 협정인 BIT와 무역과 투자를 혼합하는 방식의 PTIA의 관계와 그 의의는 무엇이며 ‘한중투자챕터’의 맥락적 의미는 무엇인가? ③ 투자자유화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에 대해서만 설립전투자를 인정하는 중국의 현재 투자협정의 경향을 볼 때 ‘한중투자챕터’ 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가? 등의 문제의식을 통하여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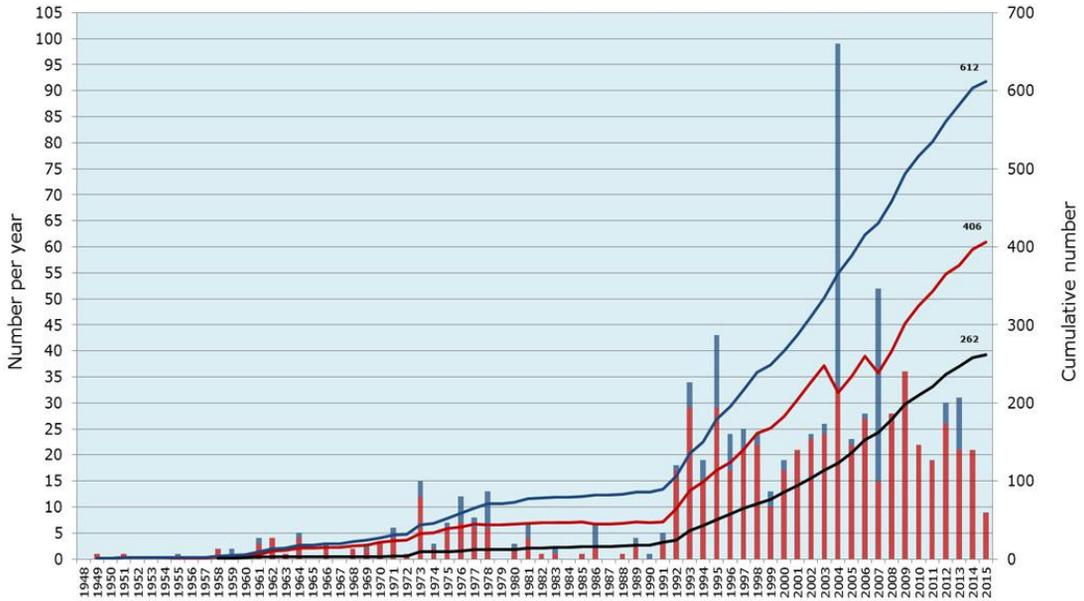
II. PTIA의 등장배경과 BIT와의 관계

가. PTIA의 등장배경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일정한 교역권내의 국가 또는 관세지역간의 특혜적 무역에 관한 협정인 PTA는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또한 그 대상 또한 전통적인 상품을 넘어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과 특히 투자에 관한 규정까지 두고 있다.

5) 2007년 개정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이고 2007.12.1. 발효되었고 (한국), 2012년 3국투자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 자세한 협정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참조.

〈표 1: 1948~2015년까지 PTA 변천〉



〈출처: WTO 사무국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fac_e.htm)

이러한 PTA의 양적인 급증과 함께 질적으로도 PTA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이외 분야, 특히 투자에 관한 규정 또는 별도의 챕터를 두고 있어 그 배경 및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 한중투자챕터의 평가를 위해 중요할 것이다. 먼저 PTA에서의 투자협정의 출현은 “무역과 투자가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현실에 부응하기” 때문이다.⁶⁾ 특히 2000년대 이후 국제무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TNCs)의 공급사슬 (value chain)이 합병이나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확대되고 있어 무역과 투자를 하나의 규범적 체계하에 규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BIT와 달리 BIT 플러스적인 조항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PTIA는 상대적으로 FDI를 증가시킨다는 경험적 근거가 있다: 즉, 단순히 FDI의 정책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BIT와 달리 PTIA는 상품 및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재권, 경쟁 및 이행요건 까지 규정하여 FDI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체약국의 경제적 환경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⁷⁾ 통상적으로 PTA가 다자간

6)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p. 86.

7) S. Miroudot, “Investment”, in J.-P. Chauffour & J.-C. Maur (ed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olicies for Development (World Bank, 2011), p. 300

통상체제인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대한 예외임에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체약국간에 발생하는 무역창출효과가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전환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세철폐의 효과에 근거한 고전적 설명이다.⁸⁾ 더 나아가 PTA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PTA도 진행되는 경우 관련국의 추가적 무역장벽의 완화를 통한 제도 개혁 및 교역증진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PTA의 특성상 단독의 BIT보다 그 체결과 비준에서 훨씬 많은 공중의 이목이 집중되어 특히 찬반양론을 고조시킬 수 있는 투자자유화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논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점이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전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⁹⁾ 설립전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투자자유화 규정에 대한 것이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TA는 다자간 무역협상과 유사한 과정을 밟게 되어 여러 분야의 복합적인 규범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일괄타결 (package deal) 방식으로 PTIA가 체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투자자유화에 대한 양허가 다른 분야의 양허와 균형적으로 협상이 될 수 있어 원하는 만큼의 투자자유화를 얻지 못하더라도 기타 분야 예를 들어 상품의 관세양허분야에서 상대국의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낸다면 전체적으로 관련 PTIA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PTIA의 ‘이익균형적 성격’은 한중투자챕터를 평가하는데도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한중투자챕터가 우리 정부가 애초 목표한대로 KORUS 수준의 투자자유화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중국시장개방을 이루었다면 전체적으로 한중투자챕터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IIT의 투자증진을 위한 3가지 접근방식

국제투자협정 (IIT)은 투자의 ‘협력’ (cooperation), ‘보호’ (protection) 및 ‘자유화’ (liberalization)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국제협정으로 크게 BIT와 PTIA로 대별할 수 있다.¹⁰⁾ 물론 최근의 IIT는 투자에 관한 위의 3가지 요소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그 배합과 강도가 각기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투자협력’은 2가지 유형이 있는데 ① 협력을 통한 투자 증진과 ② 투자보호 또는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향후 협상에 관한 골격 설정이 그것이다. ‘투자보호’에 관해서는 일정한 예외하의 설립후 투자에 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보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fair and equitable

8) 대표적으로 J. Viner, *The Customs Union Issues* (New York, 1950) 9장 참조.

9) A. Berger, *Investment Rules in Chinese Preferenti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Discussion Paper (2013.07), p. 5.

10) UNCTAD, *Investment Provisions in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 (United Nations, 2006), pp. 41–48. (http://unctad.org/en/Docs/iteiit200510_en.pdf 다운로드)

treatment: ‘FET’)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는 최소기준대우 (minimum standards of treatment), 위법한 수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유화’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예외하의 설립전 투자에 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보장, 투자에 관한 자유로운 송금의 보장, 일정한 이행요건부과 금지, 고위 경영진 및 이사진 선임의 제한 금지 등이 있다.

한중투자챗터의 효과적 분석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투자증진을 위한 IIT의 3가지 접근방식에 관한 다음의 논의가 유용할 것이다: (1) 먼저 NAFTA 이후 최근까지 나타나는 흐름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보호와 투자자유화 요소의 결합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 분야 (예를 들면 금융 및 통신 서비스, 지적권, 경쟁정책 등)에 대한 자유화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면서 상당히 광범위한 투자자유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 이러한 성격의 전형적 투자협정의 예는 KORUS이다. (2) 둘째로는 첫 번째와 연관되는 것으로 ‘투자자유화’의 포함 여부 또는 그 정도도 투자협정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즉, 투자자유치국이 설립후투자 (post-admission investments)에 대한 보호만을 규정하는 투자보장협정과 설립전투자 (pre-admission investments)를 포함하여 투자보장 뿐만 아니라 투자자유화까지 보장하는 투자협정의 구분이 그것이다. 물론 현재까지 중국의 IIT에 나타나듯이 최혜국대우의 경우에만 투자자유화를 규정하고 내국민대우에 대해서는 설립후투자에 대한 보호적 성격만을 규정하는 유형도 있고 한중투자챗터도 이러한 선상에 있다. 투자자유화의 성격과 그 정도에 따른 투자협정의 분류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외국투자자에 대한 규제권은 투자유치국의 주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그 규율방식은 통제와 자유화라는 양 극단사이에서 몇 가지 형태를¹²⁾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① 투자보장협정에서 취해지고 있는 방식으로 투자 허용여부가 국내법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통제형과 ② 합의된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자유화를 인정하는 선택적 자유화형으로 (positive 방식) WTO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 (GATS)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또한 ③ NAFTA와 그 이후 미국의 BITs 모델이 근거하고 있는 내국민/최혜국 대우 통합형 (negative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체약국이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부문별 또는 산업별 예외에 대하여는 부속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KORUS가 취하고 있다. ‘한중투자챗터’의 경우 향후 협상에서 negative 방식이 확정되면¹³⁾ 별론하고 현재로는 투자자유화라는 측면에서는 ①과 ③ 사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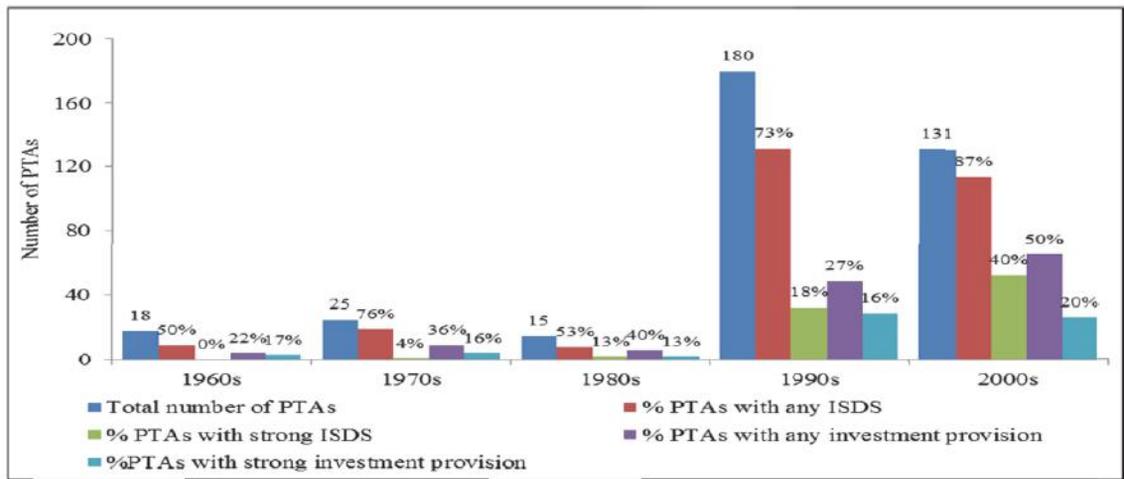
11) UNCTAD, *supra note* 10, p. 45-46.

12) 구체적 내용은 UNCTA, *Admission and Establishment*,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United Nations, 2002), pp. 16-28 (http://unctad.org/en/Docs/iteiit10v2_en.pdf 다운로드)

13)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설명자료 (2014.11), p.6

(3) 마지막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고용이나 기술이전 등을 통해 관련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¹⁴⁾ FDI가 서비스 공급모드 3 (상업적 주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비스교역과 투자간의 긴밀한 관련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적 의미의 투자는 FDI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까지¹⁵⁾ 포함하고 있어 투자규제에 대한 자유화가 투자유치국의 국내제도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것이다.¹⁶⁾

〈표 2: PTA와 투자보호조항의 추세〉



〈출처: A. Berger, *Investment Rules in Chinese Preferenti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Discussion Paper (2013.07), p.3에서 재인용)

14) P. Muchlinski *et al.*,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UP, 2008), pp. 182–223.

15) 국제자본의 이동형태는 크게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와 포트폴리오투자(portfolio investment)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직접투자인데 반해, 단지 투자수익획득을 위하여 각종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한다. 양자투자협정에서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내용은 M. Sornarajah,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UP, 2010), p. 196–197 참조

16)

한·중 투자 동향

(단위 : 억 달러, %)

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1Q-2Q	누적
한국 → 중국	금액	10.2	36.8	44.1	48.0	65.3	48.1	19.3	636.1
	순위	3	1	2	2	2	2	2	2
	비중	16.3	37.5	12.8	10.5	16.5	13.5	12.8	16.7
중국 → 한국	금액	0.8	0.7	4.1	6.5	7.3	4.8	7.8	57.2
	순위	17	15	9	8	5	7	5	12
	비중	0.5	0.6	3.2	4.8	4.5	3.5	7.5	2.6

주 : 신고금액 기준, 한국→중국 누적 투자는 '88-'14.Q2, 중국→한국 누적 투자는 '89-'14.Q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Ⅲ. 중국의 기체결 국제투자협정 (IIT) 개관

UNCTAD 자료에 의하면 2015년 4월 현재 중국이 체결한 BIT는 145개로 그 중 130개가 발효 중이며 그 외 투자관련협정은 FTA내의 투자챕터 8개를 포함하여 최근의 중국-ASEAN 투자협정을 포함하여 17개가 체결되어 15개가 발효 중이다.¹⁷⁾ 본고에서는 한중투자챕터의 분석을 위하여 중국 체결 BITs를 세대별로 분석해보고 그 외 투자관련협정은 중국의 FTA내의 8개 투자챕터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BITs) 분석

1982년 스웨덴과의 BIT 체결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현재 중국은 145개의 BITs를 체결했다. 대부분의 중국 BIT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개발도상국과의 외교적 유대 강화를 위한 경우와 2000년 이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추세에 부응하여 투자보호의 규범체계를 강화하려는 유형이 그것이다.¹⁸⁾ 이러한 중국의 BITs 정책과 그 내용은 2001년 WTO 가입 후 중국이 체결한 PTA내의 투자챕터의 방향을 결정해 왔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평가된다.¹⁹⁾ 중국의 BITs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4단계로, 투자보호의 정도와 투자자유화의 강도에 따른 규범적 내용으로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① 연간 해외직접투자 (OFDI)가 US 1억불 이하로 국영기업 중심의 해외투자가 시작된 시기 (1979-1983) ② OFDI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시기 (1984-1991) ③ 1992년 그 당시 정치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로²⁰⁾ 촉발된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의 확산으로 연간 OFDI가 US 20억불을 상회하던 시기 (1992-2003), 그리고 ④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본격적인 개방에 따른 투자액이 급증하는 시기 등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²¹⁾

보다 중요한 규범적 내용의 변화 추이에 따른 BITs 구분 단계를 보면 ①유럽형 BIT 모델로 제한적인 내국민대우 의무를 규정하였고 수용에 대한 배상 금액에 관해서만 투자자-국가 분쟁해

17)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CountryBits/42#iialnnerMenu> (2015년 4월 25일 현재)

18) Berger, *supra note* 9, p. 6.

19) 일반적으로 A. Berger, "The Politics of China's Investment Treaty-Making Program," in T. Broude *et al.*(eds),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Cambridge UP, 2011), pp. 169-185 참조

20) 등소평이 1992년 중국 남방 경제특구를 순시하며 개혁개방 확대를 주장한 담화로 <http://cpc.people.com.cn/BIG5/33837/2535034.html> 참조.

21) 구체적 내용은 C. Ca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tec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Chinese BIT Practice*, 7 *The Journal of World Investment and Trade* 621 (2006), pp. 621-622 참조

결제도 (ISD)를 인정한 1세대 BITs (1980-1998) ② 유럽형 BIT 모델로 내국민대우를 국내법 (개발도상국)에 따라 인정하든가 비합치조치와 함께 인정하고 있는 2세대 모델 (1998-현재), 그리고 ③ 2007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형태로 NAFTA를 모델로 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인정하고, “같은 상황에서”의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인정, ISD의 경우 MFN 불인정, 설립전 MFN 대우 인정, 그리고 재정위기시 송금자유 제한 인정 등의 NAFTA 스타일의 3세대 BITs 이다. (2007-현재).²²⁾

1) 1세대 BITs

각 세대별 BITs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세대는 투자유치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모습인데,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나 중국의 경우 국영기업 보호를 위해 추구되었던 정책을 내용으로 한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중국 BITs는 내국민대우 의무 자체를 규정하지 않든가 아니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5년 체결된 중국과 덴마크간의 BIT 3.4조는 “(4) Each Contracting Party guarantees that without prejudice to its laws and regulations it shall not adopt any discriminatory measures against any joint venture with participation by share-holding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against investments made by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cluding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of such investments.”라고 규정하여 (밑줄 첨가) 각국 국내법에 따른 차별적 조치를 인정하여 투자에 있어 내국민대우를 사실상 형해화시키고 있다. 한편 이와 달리 MFN 대우는 이 시기 대부분의 중국 BITs에서 인정되고 있다.²³⁾ 이와 같이 내국민대우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는 현재까지 중국 BITs 정책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²⁴⁾

절차적 규정과 관련하여 1세대 BIT에서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가 포함되지 않거나 (1985년 이전의 BITs) 수용에 따른 배상금액에 관한 분쟁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법적 측면에서의

22) 매우 유용한 구분으로 A. Berger, *supra note 9*, p.7. 참조.

23) 예를 들어 위의 중국-덴마크 BIT 제3.1조는 “(2)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its territory subject investments made by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returns of such investments to treatment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it accords to investments or returns of nationals or companies of any third State.”라고 MFN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24) 관련하여 L. Cai, Where does China Stand: the Evolving National Treatment Standard in BITs?, 13 *Journal of World Investment and Trade* 373 (2012) 참조.

제한적 접근방식에 상응하는 절차법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 투자에 관한 유치국의 주권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²⁵⁾ 예를 들어 1995년 체결된 중국-모로코 BIT 제10조는 ISD와 관련하여 “2. In case that a dispute cannot be settled amicably through direct arrangement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it is raised in written form, the dispute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investor's choice, submitted to: (1) the competent courts of the Contracting Party accepting the investment, or, (2)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created by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pened for signature at Washington D.C. on March 18, 1965. For that purpose,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grant an irrevocable consent to the submission of a dispute concern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to the arbitration proceedings.”(밑줄 첨가)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2세대 BITs

대체로 1998년 이후에 나타나는 2세대 중국 BITs는 먼저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특징적 변화가 있다. 체결대상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접근방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²⁶⁾ 먼저, 2000년 이후 내국민대우 규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개도국과 체결되는 BITs에는 주로 “각국의 국내법을 침해함이 없이”라는 제한하에서 내국민대우가 규정되고 있다. 둘째로 선진국과 체결하는 경우는 첫 번째보다는 덜 제한적인 형태의 내국민대우 규정을 볼 수 있는데 2001년 중국과 네덜란드가 체결한 BIT 및 그 이후의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BIT에서는 추가의정서에 본문의 내국민대우에 따른 비차별의무에 관해 중국의 경우는 기존의 비합치조치 (non-conforming measures)가 더 강화되지 않는 현상동결 (standstill commitments)을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는 특칙을 규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²⁷⁾ 예를 들어 중국-네덜란드 BIT 3.2조는 “2)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any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against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and disposal of the investments by the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25) A. Chen, *Should the Four Great Safeguards in Sino-foreign BITs be Hastily Dismantled?*, 7 *The Journal of World Investment and Trade* 899 (2006), p. 900.

26) A. Berger, *supra note* 9, p. 9.

27) 대단히 예외적으로 중국이 2007년 Seychelles와 체결한 (미발효) BIT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유보없는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Berger, *id.*, p. 10 참조.

Party.”라고 규정하고 부속된 의정서 Ad 3조에서 “In respec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agraphs 2 and 3 of Article 3 do not apply to: a) any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s maintained within its territory;..”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조항은 2007년 개정된 한중투자협정 3.2조에서도 발견되는데 부속서 형식이 아닌 본문 형식을 취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²⁸⁾ 이러한 방식은 한편으로는 상대국에게 비상호적으로 더 많은 의무를 부담시키지만 중국도 특히 WTO 가입 이후 점차로 내국민대우의무를 규범화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발전적 의미가 있다.²⁹⁾

이러한 실체법상 비차별의무의 변화와 함께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법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무제한적인 ISD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1998년 체결된 중국과 바바도스간의 BIT가 이 점에서 최초인데 투자자는 모든 분쟁 (any dispute)에 관해 국제중재판정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조).

3) 3세대 BITs

가장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3세대 중국 BITs 추세는 NAFTA 스타일 내지는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며 내용적으로는 투자유치국의 규제권과 투자자의 권리간의 보다 분명한 균형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⁰⁾ 먼저 비차별의무의 한 축인 최혜국대우와 관련하여서는 설립후 투자 뿐만 아니라 설립전 투자에 관한 최혜국대우가 규정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2007년 개정 한중투자협정은 3.3조는 “3.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 및 투자 관련 활동에 대하여 같은 상황에서 제3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 및 투자 관련 활동에 대하여 투자의 허용을 포함한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이하 “최혜국 대우”라 한다)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여 (밑줄 첨가) 설립전 투자행위인 허용 (admission)을 포함하여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내국민대우의 경우 중국이 현재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대비되는 점이다. 이러한 (설립후) 투자보호와 (설립전) 투자자유

28) “2. 제2조 제3항 및 제3조 제1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 유지되는 현행의 비합치조치 또는 개정되기 이전의 비합치조치의 비합치 효과를 증가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향후 모든 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단 허가된 투자에 부여된 대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의 투자가 행해진 시점에 부여된 대우보다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모든 비합치조치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밑줄 첨가)

29) W. Wang, *Historical Evolution of National Treatment in China*, The International Lawyer 39 (3) (2005), p. 778.

30) Berger, *supra note 9*, p. 10.

화 또는 시장접근권을 연계하는 형식은 NAFTA 이후 나타나고 있는데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현재 진행 중인 중국-미국 BIT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한 편으로 향후 논쟁이 될 만한 점은 중국-캐나다 BIT에서 내국민대우에 관해서는 설립전 투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캐나다가 타국과 체결한 BIT에는 대부분 설립전 투자에 관한 내국민대우가 인정되어 있고 중국-캐나다 BIT에서 설립전 투자에 관한 최혜국대우가 규정되어 동 규정을 통해 중국 투자자들이 캐나다에서 시장접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³¹⁾ 반대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중국이 설립전 투자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BIT에서 중국이 내국민대우 범위를 넓히지 않는 한 캐나다 투자자는 간접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또한 투자협정상 새로운 실체법적 의무가 도입되는데 먼저 ‘최소기준대우’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가 규정되면서 국제관습법의 중요성이 중국 BIT에 나타난다. 이것은 중국이 기존의 국제관습법이란 개념 자체가 서구적이고 반사회주의적이라고 배척했던 점에 비추면 상당한 변화이다.³²⁾ 중국-멕시코 BIT 5조에³³⁾ 처음 규정된 최소기준대우는 미국의 2004년 BIT Model 5조를 그대로 옮겨왔는데, 단지 직접적인 ‘국제관습법’이란 표현 대신 그 구성요건인 ‘국가실행’과 ‘법적 의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자유로운 투자관련 송금 (transfer)에 대한 예외의 도입도 특징적인 점으로 심각한 국제수지상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체약국의 투자규제권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2014년 체결된 중국-캐나다 BIT 12.4조가 가장 최근의 형식이다. 기타로는 ‘안보상 일반예외’나 투자관련 법규나 사법결정의 공표와 관련된 투명성의 의무, 이행요건금지, 환경적 조치, 지적재산권 규정 도입 등도 특징적 변화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3

31) 일반적인 최혜국대우의 미래효에 관해서는 S. Schill, *Multilateralizing Investment Treaties through Most-Favored-Nation Clauses*, 27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96 (2009) 참조.

32) C. Cai, China-US BIT Negotiation and the Future of Investment Treaties Regim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2 (02) (2009), p. 468-469.

33) “Art. 5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2. For greater certainty, this Article prescribes the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as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to be afforde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concep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do not require treatment in addition to or beyond that which is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as evidence of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A determination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of a separate international agreement, does not establish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this Article.”

세대 중국 BITs의 특성과 함께 체결국에 따른 신축적 접근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전통적인 자본수출국인 스위스와 2009년 개정된 BIT에서는 투자유치국의 규제권과 투자자의 권리간의 균형점이 상대적으로 후자에 치우친 유럽형 모델에 따른 경향이 매우 강했다.

나. PTA 투자협정 (PTIA) 분석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후부터 나타나는 중국의 PTIA는 FTA의 성격상 BIT보다는 포괄적이고 투자자유화의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상 실질적인 지역무역협정으로 최초는 중국이 2001년 가입한 남동아시아권의 개발도상국간의特惠무역협정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이고 그 후 2014년 발효된 중국-스위스 FTA까지 총 11개의 PTA가 있는데³⁴⁾ 그 중 특수관계인 마카오와 홍콩을 제외하면 8개의 FTA에 투자관련규정이 나타난다.³⁵⁾ 8개의 FTA 투자규정 중 7개의 FTA에서 별도의 투자챕터를 두고 있지만 싱가포르와 코스타리카와의 FTA에서는 각각 중국-아세안 FTA와 코스타리카와의 양자간 투자협정을 준용하고 있고 2013년 체결된 스위스와 아이슬란드와의 FTA는 기존 중국과의 BIT를 언급하는 수준의 내용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투자규정은 파키스탄 (2006년 체결), 뉴질랜드 (2008), 페루 (2009) FTA³⁶⁾와 2009년 중국과 ASEAN이 체결한 투자협정 (2009)에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4개의 국제투자협정을 분석한다.

1) 2006년 중국-파키스탄/ 2009년 중국-페루 PTIA

중국이 체결한 통상과 투자를 포함하는 “최초의 포괄적 양자간 협정”인 중국-파키스탄 PTIA는 중국이 인접 우호국과 단순한 관세양허협상을 넘어 실질적 투자규정을 협상했다는 복합적 의미가 있는 협정으로 평가된다.³⁷⁾ 그 구체적 내용은 앞에서 본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2세대 중국 BITs에서 볼 수 있는 표준적 조항을 포함하고 1989년 체결한 파키스탄과의 BIT를 상회하는 투자자보호를 규정하였는데 동 BIT에는 규정되지 않았던 내국민대우(48조)와 모든 투자분쟁에 대한 ISD 적용(52조)이 그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파키스탄 PTIA는 자산(asset) 중심으로 투자를 정의하

34) 중국 상무부 FTA 네트워크 (http://fta.mofcom.gov.cn/english/fta_qianshu.shtml) 참조

35) UNCTA Investment Policy Hub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CountryOtherIAs/42#iialnnerMenu>) 참조.

36) 중국-파키스탄 FTA 10장; 뉴질랜드 FTA 11장; 페루 FTA 10장. 관련 협정문 및 정보는 <http://fta.mofcom.gov.cn/english/index.shtml> 참조

37) G. Wang, China's FTAs: Leg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5, No. 3 (2011), p. 498.

면서 투자유치국의 “법규에 따르도록”하고 있고 (46.1조), “각국의 법규를 침해함이 없이” 내국민 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48.2조) 송금 또한 투자유치국의 법규에 따르도록 규정하여(52조) 투자유치국의 규제권을 강화시켰다.

중국이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인 중국-페루 PTIA는 3세대 중국의 BITs와 그 궤를 같이한다. 즉, 상대적으로 NAFTA化 된 이 협정은 시장접근에 관한 사항 이외는 대부분 페루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신축적 성격의 협상으로 평가된다.³⁸⁾ 또한 중국이 공식적으로 “국제관습법”이란 문구를 협정문에 받아들인 최초의 협정으로 그 정치적 의미도 각별한 협정이다. 구체적으로 내국민대우 조항은 비합치조치에 대한 기득권 인정조항 (grandfathering clause)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었고 (129조 & 130조) 설립전 투자 형식으로 최혜국대우가 규정되었다 (131조).

2) 2008년 중국-뉴질랜드 PTIA (‘SNPTIA’)

중국이 OECD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투자협정이고 가장 다양한 투자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뉴질랜드와의 PTIA는³⁹⁾ 최근까지의 중국이 체결한 국제투자협정 중 가장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선 동 PTIA에서는 투자 대상을 포괄적 자산으로 규정하여(135조) 국내법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투자와 그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FET)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에 따른” (in accordance with commonly accepted rules of international law)이라는 문구를 붙이거나 (143.1조), 의무위반의 예로 재판거부나 비차별의무 등을 예시하였고 특히 다른 실체법적 의무위반이 자동적으로 FET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혀 (143.5조) FET를 구체화시켰다. 전술했듯이, 중국은 서구의 법개념이라는 이유로 국제관습법의 도입을 반대하다가, FET와 관련하여 SNPTIA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이라는 표현으로, 그 직후 체결된 2008년 멕시코와의 BIT에서는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인 “국가실행”과 “법적 확신”이라는 문구로 간접적으로 국제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다가 2009년 페루와의 PTIA에서 전면적으로 국제관습법을 서술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투자협정변천에서 NAFTA의 접근방식이 끼친 영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⁴⁰⁾

38) Berger, *supra note* 9, p. 21.

39) 일반적으로는 D. Kalgerimis, Investment Chapter of the NZ-China FTA, *New Zealand Law Journal* (2009,05), pp. 156-160 참조

40) Berger, *supra note* 9, p. 19.

둘째로, 투자법에서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적용을 보다 예측가능하게 하기 위해 NAFTA 접근방식으로 볼 수 있는 “같은 상황에서” (in like circumstances) 라는 표현을 첨부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138조 & 139조 참조). 또한 최혜국대우의 적용범위에 관해 ISD의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였고 (139.2조), 이행요건부과를 최초로 금지시켰다 (140조). 셋째로 투자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면서 투자유치국의 규제권 또한 명확화 또는 강화시킨 점도 중요하다. KORUS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킨 간접수용 (Indirect Expropriation)이 SNPTIA에서도 큰 쟁점이었는데, 계약국의 어떠한 행위가 간접수용이 되는가를 “사실상 차별적”(discriminatory in effect) 이거나 “구속력 있는 계약국의 투자자에 대한 서면약속 위반”(in breach of the state's prior binding written commitment to the investor) 으로 구체화 시켰다 (부속서 13 4항). 또한 KORUS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공중보건, 안전, 환경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간접수용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하였다.⁴¹⁾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투자챕터에도 적용되는 일반예외를 중국-네델란드 FTA 17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본질적 안보상 이익, 국제수지 문제발생시 송금제한 및 조세관련 예외들을 규정하고 있다 (200조~204조).

네 번째로 절차법적으로 SNPTIA는 중국이 기체결한 FTA중에서는 가장 상세한 ISD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154조 본안전 항변(preliminary objection), 155조의 공동해석(joint interpretation), 156조 청구의 병합(consolidation of claims), 그리고 ISD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공개에 관한 157조 등은 이전에 중국이 체결한 투자협정에서는 명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미국의 BITs 모델이나 KORUS ISD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ISD는 2008년에 서명된 중국-멕시코 BIT와 함께 2세대 투자협정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의 대외직접투자(outward FDI)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²⁾

41) 중국-뉴질랜드 PTIA 부속서 13-5항 “5. Except in rare circumstances to which paragraph 4 applies, such measures taken in the exercise of a state's regulatory powers as may be reasonably justified in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welfare, including public health, safety and the environment, shall not constitute an indirect expropriation.”

42) A. Berger, “The Politics of China's Investment Treaty-Making Program,” in T. Broude *et al.*(eds),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Cambridge UP, 2011), p. 176.

3) 2009년 중국-아세안 투자협정 (CAIA)

동아시아 금융위기 渦中인 1997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에 의해 시작된 중국과 아세안간의 FTA 체결의 대미를 장식한 CAIA는 양 당사자간의 “투자체제의 점진적 자유화와 투자유치 공조 및 투명성 제고와 투자 보호의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1조). 최근 아세안이 체결한 투자협정은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과 연계하여 설립전 투자를 포함하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규정하는 형식의 투자자유화를 추구하였다. 예를 들어 2009년 체결한 한국-아세안 투자협정⁴³⁾ 3조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허가·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자국의 조치를 통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 및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고 설립전 투자를 포함한 내국민대우를 규정하면서 15.1조에서 “1. 제3조(내국민대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국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특별 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협정에 따라 그 당사국이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밖의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비합치조치에 의한 제한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타 국가들과의 투자자유화에 대한 규정과는 달리 아세안이 중국과 체결한 2009년 투자협정은 현재까지 중국이 체결한 투자협정과 같이 ‘설립전 투자’를 포함하는 내국민대우의 투자자유화 요소가 결여된 것이었다.⁴⁴⁾ 이것은 “중국 투자자와 외국투자자간의 서로 다른 등록제도와 국영기업 개혁을 포함한 중국경제의 적응과정이 현재 진행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평가된다.⁴⁵⁾

43)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으로 협정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참조.

44) Article 4: National Treatment

“Each Party shall, in its territory, accord to investors of another Party and their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investors and their investments with respect to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maintenance, use, sale, liquidation, or other forms of disposal of such investments.” (밑줄 첨가)

45) H. Chen, China-ASEAN Investment Agreement Negotiations: the Substantive Issues, 7 Journal of World Investment and Trade 1 (2006), p. 149.

〈표 3: 2015년 5월 현재 현재 중국의 주요 국제투자협정 (IIТ) 내용 분석〉⁴⁶⁾

상대국	협정		투자협력		투자보호					투자자유화			
	형태	체결 연도	투자증진	향후 협상을 위한 골격 ¹⁾	투자/투자자 정의	내국민대우 ²⁾	최혜국대우	FET	수용	ISD ³⁾	설립권 ⁴⁾	송금	이행 요건
호주	BIT	1988(1세대)			√		√	√	√	(√)			
네덜란드	BIT	2001(2세대)			√	√	√	√	√	√	(√)	√	
코트디부아르	BIT	2002(2세대)			√	(√)	√	√	√	√	(√)	√	
홍콩	PTIA	2003	√										
칠레	PTIA	2005	√	√									
파키스탄	PTIA	2006	√	√	√	(√)	√	√	√	√			
한국	BIT	2007(2세대)	√	√	√	√	√	√	√	√	(√)	√	√
뉴질랜드	PTIA	2008	√	√	√	√	√	√	√	√	(√)	√	√
한국 일본	BIT	2012(3세대)	√	√	√	√	√	√	√	√	(√)	√	√
캐나다	BIT	2013	√	√	√	√	√	√	√	√	(√)	√	√
한국	PTIA	2015(가서명)	√	√	√	√	√	√	√	√	(√)	√	√

〈참고: 1: 예를 들면 2012년 한국·중국·일본 3국투자협정 27조 3항은 체약당사자는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협상을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내국민대우에 관해 ()는 내국민대우가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따라 부여된다는 것임, 예를 들면 1992년 한중투자협정은 내국민대우에 관해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국가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가능한 한 촉진시키고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가 허가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ISD에 관해 ()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해서만 ISD가 인정된다는 것임
 4: 설립권에 관해 ()는 최혜국대우에 관해서만 설립권투자가 인정된다는 것임

46) 이 표는 Berger, *supra note 9*, p.15 표의 내용을 근거로 한중간 국제투자협정에 맞추어 수정 보완한 것임

다. 양자의 관계

중국이 1976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투자에 관한 국제규범은 BIT와 PTIA를 양 축으로 전개되어 왔고 양자의 관계를 통해 한중투자챗터의 위상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기술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듯이 양자의 관계는 각 시기별 BITs의 법정정책적 기초와 내용이 대응되는 PTIA에 큰 영향을 주었고 한중투자챗터와 비교되는 BIT는 현재까지 중국이 체결한 IIT중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2013년 중국-캐나다 BIT이다. 양자를 투자규범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즉 시장접근, 비차별, 대우의 기준, 이행요건, 투명성, 비경제적 요인 (예를 들면 환경적 고려나 인권, 노동권 등), 분쟁해결제도 등의 7가지 요소로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1: 중국-캐나다 BIT와 한중투자챗터 비교〉

중국-캐나다 BIT	구성요소	한중투자챗터
MFN만 설립전투자 인정	시장접근	동일
NT는 설립후투자만 인정(비합치조치)	비차별의무	"
국제(관습)법에 따른 FET	최소기준대우	" (국제관습법 명시)
적용	이행요건금지	"
적용	투명성	"
환경예외	비경제적 요소	"
ISD	분쟁해결제도	제한적 ISD ⁴⁷⁾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중투자챗터는 최첨단의 캐나다 BIT와 비교할 때 ISD에서 국내검토절차를 거치는 정도의 제한 외에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BIT 틀에서 움직이는 중국의 투자협정체결 관행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중투자협정/3국투자협정의 틀에서 한중투자챗터가 타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7) 한중투자챗터 12.12조 3항은 한중투자협정과 같이 (9조 3항) 국제중재에 회부하기 전에 투자유치국이 국내행정검토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표 4-2: 한중투자협정 등과 한중투자챗터 비교〉

한중투자협정(3국투자협정)	구성요소	한중투자챗터
MFN만 설립전투자 인정	시장접근	동일
NT는 설립후투자만 인정(비합치조치)	비차별의무	”
제한없음 (“일반적으로 수용된 국제법”)	최소기준대우	국제관습법 명시
적용	이행요건금지	”
적용	투명성	”
(환경, 지재권, 안보)	비경제적 요소	환경, 안보
제한적 ISD	분쟁해결제도	제한적 ISD

IV. 한국의 기체결 국제투자협정 (IIT) 개관

2015년 5월 현재 한국이 체결한 FTA는 가서명된 한중FTA를 포함하여 15개로 그 중 11개가 발효 중이며 체결된 15개 중 12개의 FTA에 투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⁴⁸⁾ 또한 BIT는 98개가 체결되어 그 중 83개가 현재 발효되고 있다.⁴⁹⁾ 이하에서는 한국과 중국간의 BIT를 중점적으로 보고 참고로 한일간 투자협정과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인 KORUS상의 투자협정을 살펴본다.

가. 한중투자협정과 그 내용

1992년 체결되어 2007년 개정된 한중투자협정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용어 정의, 투자유치국의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시 보상의무, 송금보장의무), 투자분쟁의 국가간 분쟁절차, 투자분쟁의 ISD, 투명성, 기타 조항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2년 투자협정에 비해 투자자로 인정되는 자연인의 ‘국적’을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법인의 정의에서 해당 국가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48) 관련 협정문 및 정보는 <http://fta.go.kr/main> 참조; 2011년 7월 잠정발효된 한-EU FTA에는 수용·보상, ISD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은 미포함되었지만 Lisbon 조약에 따라 향후 투자보호 관련 협상권한이 EU 집행위에 부여될 경우는 투자보호 관련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보호 재검토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49)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CountryBits/111#iialnnerMenu> 참조

요건을 삭제하였다(1조). ‘투자자에 대한 대우’와 관련하여서 개정 협정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도입하여 명시하였다(2조 2항). 동 대우는 최근 ISD 제소사유로 자주 인용되는 투자유치국의 의무로서 그 범위 확정에 많은 논란이 있다.⁵⁰⁾ 또한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이행의무금지도 규정되었는데(2조 3항), ‘차별적’의 의미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포함될 것인가의 논란이 있다. 또한 이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현행 조치는 내국민대우 위반 조치와 마찬가지로 점진적 철폐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3조 2항). 수용 및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보상 기준” (Hull formula)이 개정 협정에 반영되어 있고 (4조), 직접적인 국유화 또는 수용과 함께 ‘간접적인’ 수용 개념을 규정하여 사실상 국유화 또는 수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 가치 침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문화 하였다. 또한 2007년 개정협정은 투명성의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11조), 투자유치국이 투자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 사법적 결정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이다. 또한 현재 중국의 행정체제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것으로 계약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이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10조 4항).

나. 한일투자보장협정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 대외투자 유치를 증진하고자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일간 투자협정 협상은, 기존의 투자협정이 투자국이 투자유치국에 제안하여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그 당시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투자유치국의 입장에 있던 한국이 투자국인 일본에 협정체결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⁵¹⁾ 일본이 1998년까지 체결한 투자협정이 8개에 불과했다는 점과 한일투자협정의 내용이 1994년 미국의 BIT Model에 근거했다는 점을 참조하여 23개 조항의 한일투자협정의 실제법적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도 포함하고 있고, 투자자로 인정되는 자연인의 국적 결정은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1조). 또한 한중투자협정이나 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인 투자자유화의 인정으로 설립전 투자에 대한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2조).⁵²⁾

50) 일반적으로 R. Klaeger,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Cambridge UP, 2011) 참조.

51) 김관호, “한일 투자협정의 의의와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의 구상”, 동북아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2000), p. 59

52) “제2조 1항: 일방계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계약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의 설립...” (밑줄 첨가)

따라서 한일간 자본거래가 자유화되었고 투자 자산의 운용과정의 차별이 금지되었다.⁵³⁾ ‘투자자에 대한 대우’와 관련하여서 ‘내국민대우’(2조 1항), ‘최혜국대우’(2조 2항),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10조 1항)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투자자에 대한 수출의무, 국내부품 조달의무, 국내상품 또는 용역 구매의무외국환 연계의무, 기술이전 의무 등의 이행의무금지도 규정되었다(2조 3항).⁵⁴⁾ 비차별의무(2조)·고위경영진이사회 제한금지(8조 3항)·이행의무금지(9조)와 관련하여 현행 비합치조치에 관하여는 부속서 1과 2의 조치를 구분하여 규정하여 부속서 1에 규정된 분야나 대상에 대한 조치는 예외조치를 새롭게 채택할 수 있고(4조), 부속서 2에 관한 조치에는 ‘자유화후퇴방지’ 의무를 부가하고 있다(5조). 이것은 KORUS 투자챕터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투자자유화 및 네거티브 방식에 따른 결과이다. 수용 및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 기준(Hull formula)이 반영되어 있고, 직접적인 국유화 또는 수용과 함께 수용·국유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투자가치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문화 하였다(10조). 또한 ‘투명성’ 의무와 관련하여, 각 계약당사국은 투자 및 영업활동과 관련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과 자국의 법률, 규칙, 행정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결정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7조). 여타의 투자협정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노동관련 조항으로 8조 1항에 따르면 각 계약당사국은 타방계약당사국의 투자자들이 이 조의 요건을 계속적으로 충족하는 한, 동 투자자나 그들을 고용한 타방계약당사국의 기업이 상당한 양의 자본이나 다른 자원을 투자하였거나 그 과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입국·체류 및 근로허가와 관련된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역 안에서의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또는 운영지도를 위한 일시적인 입국·체류 및 근로허가를 동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8조 1항). 투자수익의 자유 송금(12조)과 국제금융상황에 따른 긴급 세이프가드 조치의 인정(17조) 등도 자세히 규정되었다. 투자협정의 이행 및 운영에 관한 양국간 합동위원회의 설치도 규정되었는데 한중투자협정과는 다른 점이고 투자체제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아래의 3국투자협정이나 한중투자챕터에서도 유사한 제도화가 규정되어 있다.

53) 김관호, *id.*, p.61

54) 단 2항의 예외가 있다 (“제1항의 규정은 일방계약당사국이 타방계약당사국의 투자자의 자국의 영역안에서의 투자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혜택을 부여하거나 지속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을 조건으로 제1항바목 내지 차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 한중일 3국투자보장협정 ('3국투자협정')/ 한미 FTA 투자챗터

전세계 GDP의 1/5을 차지하는 한국·중국·일본간에 2012년 체결된 3국투자협정은 체결국의 경제적 비중 못지않게 그 내용면에서도 특기할 만한 사항들이 있다. 먼저 투자규범상 '주요개념'에 관해 상세히 규정 하였고 (예를 들어 투자,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최혜국대우, 간접수용 등), '투자 설립권' 제한 (2.2조)이나 비합치조치의 잔존(3조 2항), 이행요건금지의 제한적 적용 (7조) 등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규제권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였고, 세금이나 핵심적 안보이익에 관한 예외의 규정 및 건전성 조치나 자유송금에 대한 임시조치허용 등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정책설정 및 실행권을 넓게 인정하였고, 지재권의 국내집행에 관한 상세 규정(9조)을 두고 있다. 또한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관련하여 기체결된 투자협정과 3국협정 중 보다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25조) 투자자 대우에 관해 하향적 적용을 방지하였다.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국제투자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및 자유화를 규정하고 있는 KORUS 투자챗터는 3개 절과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문과 7개의 관련 부속서, 부속서한으로 구성되어 있다.⁵⁵⁾ 제1절의 14개 조항은 적용범위,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투자유치국 정부의 의무 및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투자유치국의 주요의무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소기준대우, 수용시 보상의무, 이행요건부과금지, 송금보장, 고위경영자국적요건 부과금지 등이 있다. 이 중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자국적요건 등에 대해 비합치조치를 유보에 기재하여 협정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KORUS가 원칙적으로 투자자유화를 전제하는 'negative' 접근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투자분야 비합치조치는 서비스 분야 비합치조치와 함께 KORUS 전체에 적용되는 별도의 부속서에 기재되어 있다. 절차법적으로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제2절은 제1절에 규정된 의무 위반시 개시될 수 있는 ISD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한중투자협정과는 달리 국내구제절차의 전치적 기능이 없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제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본안전 항변이나 본안심리절차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ISD의 명확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KORUS는 해당국 영역안에서 해당국법에 따른 집행 뿐만 아니라 ICSID/뉴욕협약에 따른 집행도 가능하게 하게 판정 집행을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3국투자협정이나 한중투자챗터에는 판결집행에 관해 판정의 집행이 추구되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 효력 있는 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집행된다고 추상적

55) 협정문 열람은 <http://www.fta.go.kr/us/> 참조; KORUS 투자챗터 각 조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법무부, 「한미FTA 투자분야 연구」(2008), 32-345쪽 참조

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재판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단심제여서 판정이 내려지면 그 판정은 최종적이며, 선례구속이 적용되지 않아 분쟁당사자간 그리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KORUS 투자챕터상의 중재판정도 이러한 일반론을 따르고 있다(11.26조 1항 및 5항). 다만 중재판정에 하자가 있어 그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분쟁당사자는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ICSID 협약 제52조 제1항). 이러한 판정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한중투자협정(9조 8항) 또는 한중투자챕터(12.12조 10항) 또한 KORUS와 동일한 입장이다. 한편, 판정 불이행의 경우 KORUS에서는 22장 9조에 따른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11.26조 9항), 한중투자협정이나 한중투자챕터에는 중재판정 불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모호하다.

V. 결론

전술하였듯이 본고에서는 3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통해 한중투자챕터를 평가하고자 하였고 그 내용을 결론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먼저 여러 측면의 분석을 통해 보면 중국의 국제투자협정체결은 양자간 투자협정 (BIT)의 틀에서 특혜무역투자협정 (PTIA)을 체결하여왔기 때문에 2007년 개정 한중투자협정 또는 2012년 한중일 3국투자협정의 테두리에서 한중투자챕터가 타결된 것은 이러한 중국의 기조를 볼 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 내용도 무난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둘째로 투자 단독의 내용만 다루는 BIT와 무역과 투자를 혼합하는 방식의 PTIA의 관계와 그 맥락에서 한중투자챕터의 의의를 보면 한중 FTA가 비록 양자간 협정이기는 하나 일괄타결 방식의 다자간 무역협정의 협상 방식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중투자챕터의 한중 FTA 전체 맥락의 이익균형적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한중투자챕터가 제한적 투자 자유화의 기조로 다소 우리 측 기대에는 하회하지만 기타 다른 분야에서 좀 더 많은 양허를 얻어낼 수 있었다면 한중투자챕터의 긍정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한중 FTA에서 예를 들면 핵심적인 상품양허분야에서 공산품 중 비개방품목의 비중이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6.5%, 중국은 14.9%라는 점과 발효 즉시 관세철폐대상이 한국은 58.9%, 중국은 20.3%라는 점이나⁵⁶⁾, 정부조달분야의 미포함, 서비스분야의 제한적 개방 효과 등만 보더라도 이익균형이 적절히

56)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설명자료 (2014.11), p. 18.

이루어진 협상이라고 보기 힘들고 따라서 한중투자챕터의 이익균형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덧붙여서 우리나라로서는 對中 투자가 기존의 노동력을 활용한 가공무역을 위한 투자에서 중국 국내소비재 생산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직접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진출분야의 기회균등에 중점을 두는 투자자유화의 보장을 어느 정도 확보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일리 있는 점이라 생각된다. (3) 마지막으로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서비스 투자 분야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투자자유화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에 대해서만 설립전투자를 인정하는 중국의 현재 투자협정의 경향을 볼 때 당분간은 바라기 힘든 정치적 修辭에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중 FTA 성과와 과제에 대한 조망

제 4 주제

한·중 FTA와 나고야의정서

주제발표 : 손지영 (이화여대 법과대학 박사과정)

토 론 : 김명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중 FTA와 나고야의정서

-제15장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1)

손지영 (이화여대 법과대학 박사과정)

I. 서론

2014년 10월 12일 발효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제1조에 명시한 목표 중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에 구속력을 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 협상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유전자원은 생명공학기술과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선진국의 바이오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책임은 개발도상국에만 부담이 되도록 하고, 유전자원 이용에서 나온 이익은 선진국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전개하여 이 협약의 목표로 삽입되었다.

한국은 나고야의정서 서명국이며, 국내 이행을 위해 현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이다. 현재까지 비준한 50여개국은 대부분 인도, 베트남 등 유전자원이 풍부한 제공국이 대부분이다. 일본, 영국, 독일 등 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국내 이행체계준비, 해외 국가 동향 등을 고려하여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한국은 주로 유전자원 이용국으로, 이 국가들과 행보를 함께하고 있으며, 의정서 당사국 회의 논의동향, 주요 국가 비준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아시아 동부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4번째로 면적이 크고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국가 중 하나로서, 나고야의정서의 ABS체제 이행 시 향유할 혜택이 많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지만, 아직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연간 발행되는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실시 추진계획」에 의하면, 중국은 유전자원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1) 본고는 완성도가 낮은 초고이므로, 인용 자제 부탁드립니다.

2013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이 조례는 중국국무원에 제출되어 조만간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학자에 따르면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가입은 국가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다만 여러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합의 및 법률제정이 필요하여, 가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²⁾ 또, 한-중FTA 제15.17조에서 나고야의정서를 명시하고 있는 데에서 가입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접근(Access), 이익 공유(Benefit-sharing), 의무 준수(Compliance)를 세 가지 주요 의무로 규정하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해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과 이익 공유를 위한 제공자 및 이용자 간의 계약인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즉,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자원제공자와 MAT를 체결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PIC를 받아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의무적으로 자원제공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또,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은 이러한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나고야의정서의 ABS 체제에서는 자원이용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한 상업화에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4년 말 한국바이오협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유전자원 조달지로 1위는 ‘기타’ 지역(미국, 뉴질랜드, 일본, 호주, 서아시아 등 포함)으로 53.5%를 차지하였고, 이어 중국이 48.8%로 2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단일지역임을 감안하면 중국이 사실상 최대 수입국임을 의미한다.³⁾ 한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에 풍부한 유전자원이 자생하고 있으므로 대량으로 빠르게 수입할 수 있는 이익을 누려왔다. 또, 제약분야에서는 국내생산량이 적은 원료는 중국산 원료와 함께 제조하는 경우도 있어,⁴⁾ 국내 제약업체의 중국원료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의 천연물의약품 중 85%가 중국에서 수입된다고 하며,⁵⁾ 한-중 FTA 발효 후 중국으로부터 의약품원료 수입이 급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FTA와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미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Xue Dayuan교수의 의견. Xue Dayuan, 중앙민족대학교(Minzu University of China) 생명환경과학학과(북경) 교수, 환경보호부 남경환경과학연구소(남경) 연구원, 생물다양성보호 수석전문가.

3) “생물자원 해외의존 70%나 되는데...”, 헤럴드경제, 게재일: 2014년 10월 8일.

4) 동아ST의 ‘스타렌’과 같은 약품은 강화도에 자생하는 국산애엽을 원생약으로 개발되었으나, 국내생산량이 적어 중국산 원료를 함께 사용하여 제조한다. 김지섭(2013), www.monews.co.kr (검색일: 2015년 5월 1일)

5) Xue Dayuan 교수의 의견이다.

II. 한·중 FTA와 나고야의정서의 관계

한·중 FTA는 제1.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에서,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기존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고 규정하면서, 양국이 당사자인 기존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재확인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경우에는 현재 양 국가 모두 당사국의 지위에 있지 않으나, 나고야의정서의 모(母)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해서는 모두 당사국의 지위에 있다.⁶⁾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3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를 구체화한 조약이므로, 한국과 중국의 생물다양성협약 상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제16장인 환경과 무역 장(chapter)에서도 제16.4조 “다자간환경협정” 조항에서, “1. 양 당사국은 다자간환경협정(이하 “다자환경협정”이라 한다)이 환경보호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이 장이 그러한 협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 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다자환경협정의 협상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3. 양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서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다자간환경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발효 중인 주요 FTA에서 환경조항에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협력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가장 오래된 FTA 중 하나인 ASEAN과의 협정에서는 환경 관련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으며, 파키스탄과의 FTA에서는 환경 보호 및 보전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을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 그 외 환경 조항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제외한 FTA에서는 이 협정을 통해 환경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협력 장에서 환경협력을 함께 언급하고 TBT장에서 환경 관련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정도로 다루고 있다.⁷⁾ 그러나 한·중FTA에서는 독립된 장(chapter)을 마련하여,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 준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협력을 강화하며 환경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양 당사국의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준수 의지도 동 챕터에서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중국의 경우 1993년 12월 29일부터, 한국의 경우 1995년 1월 1일부터 당사국이다. www.cbd.int

7) 김정곤·김혜윤,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년 12월 20일, p. 102.

특히, 제15장 지적재산권에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있다. 제15.17조 제2항에서 “양 당사국은 1992년 6월 5일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창설된 원칙을 인정하고 재확인하며,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요건, 특히 사전통지 합의(PIC)에 관한 요건과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존중한다.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협약 간의 상호 지지적 관계를 제고하는 노력을 장려한다.”고 규정하여, 나고야의정서의 ABS체제에서 당사국의 의무인 유전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PIC)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공유를 존중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Ⅲ. 제15장 지식재산권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항 검토

중국은 기체결한 FTA인 중-뉴질랜드 FTA⁸⁾, 중-페루 FTA⁹⁾ 및 중-코스타리카 FTA에서도 지적재산권 장에서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과 민속문화(Folklore)를 다루고 있다.¹⁰⁾¹¹⁾ 한-중FTA에서는 지적재산권에서 제15.17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기체결 FTA의 방식과 유사하다. 그 동안 중국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장에서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PP협상에서도 개도국의 주장에 따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보호에 대하여 환경 장에서 논

- 8) 중-뉴질랜드 FTA는 전통지식과 지적재산권을 다소 느슨하게 적용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시켰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선연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으로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중-뉴질랜드 FTA의 지적재산권 조항들은 강제성이 없고, 국제의무를 FTA보다우위에 두고 있어서 설령 양국간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은 국제의무에 상충하지 않는 이상 이를 통상문제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또한 전통지식의 범위를 민속문화로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실제 조항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놓고 있지 않다. 윤강재, 「중국의 중약자원 관리 현황과 세계화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52
- 9) 중-페루 FTA는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노력을 장려하는 정도에서 기존의 생물다양성협약 등에서의 규정된 사항을 상호 준수하기로 규정하고 있따는 점에서 강제력이 부족하지만, 국내 입법을 통해 특허를 신청할 경우 유전자원의 원산지 또는 기원을 공개하고, 사전통보동의 등의 의무를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자원보호에 실효성있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특히 출처 공개가 과도한 의무사항이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국의 특허법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전통지식 보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강재, 전개논문, pp. 152-153.
- 10) 유예리,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 국제레짐에 대응한 중국의 법제와 정책」, 국제법 학회논총, 제56권 제3호(통권 제122호), p.223.
- 11) 그 전에 체결한 다른 FTA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기존 FTA는 지적재산권 장(chapter)도 두고 있지 않다. Susy Frankel, Attempts to protect indigenous culture through free trade agreements, International Trade in Indigenous Cultural Heritage, Edgar Elgar(2012,11), p. 130.

의되고 있으나,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지적권 등 다른 장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¹²⁾

1. 제15.17조 검토

제1항은 “양 당사국은 과학, 문화 및 경제 발전에 대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기여를 인정한다.”고 하여, 특별한 법적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물적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유전자원, 전통지식 뿐만 아니라 민속 문화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나고야의정서와 차이가 난다. 나고야의정서는 제3조에서 “이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¹³⁾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이 의정서는 또한 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나고야의정서는 ① 유전자원, ②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으며, 제2조와 함께 해석하여 ③ 파생물도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제2조¹⁴⁾ (다)항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은, 협약 제2조¹⁵⁾에 정의된 생명공학기

12) 박원석, 「한-중 FTA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관련 특허요건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2014년 FTA법제지원연구사업(II) 제2회 FTA 법제포럼, 2014년 7월 25일, 한국법제연구원, p.9.

13)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1. 국가가 자신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국가의 정부에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국가입법에 따른다.
2. 각 체약 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이 조와 제16조 및 제19조에 언급된 체약당사자가 제공하는 유전자원은 그 자원의 원산국인 체약당사자 또는 이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자가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4.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경우, 그 접근은 상호 합의된 조건과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5.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그 자원을 제공하는 체약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체약당사자의 사전통고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가 제공한 유전자원에 기초한 과학적 연구를 그 체약당사자의 완전한 참여와 가능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영토 안에서 개발·수행하도록 노력한다.

14) 나고야의정서 제2조 용어 사용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용어가 이 의정서에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가) “당사국 총회”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의미한다.

(나) “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을 의미한다.

(다) “유전자원 이용”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생명공학기술”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정 용도로 산출물 또는 공정을 개발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생물학적 체계, 살아있는 유기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기술적 응용을 의미한다.

(마) “파생물”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 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을 의미한다.

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온 파생물도 동의 정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¹⁶⁾ 그런데 한-중 FTA에서는 파생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데,¹⁷⁾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에는 파생물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¹⁸⁾ 또, 나고야의정서가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한 것으로 제한¹⁹⁾하고 있지만, 한-중FTA에서는 그러한 한정 표현을 두고 있지 않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ILC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데, 중국이 국내정치적으로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을 기치로 세우고 있는 점과 같은 맥락의 정책으로 보인다.²⁰⁾ 또, 중국은 ILC가 보유하지 않은 전통지식도 나고야의정서에 포함시켜,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동식물에 대한 연구는 모두 자국의 전통지식에 해당된다고 우길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²¹⁾

2항은 “양 당사국은 1992년 6월 5일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창설된 원칙을 인정하고 재확인하며,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요건, 특히 사전통지 합의에 관한 요건과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존중한다.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협약 간의 상호 지지적 관계를 제고하는 노력을 장려한다.” 등 항 역시 법적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나고야의정서 상 사전통보승인(PIC)에 관

15)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는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생명공학’, ‘유전자원 원산국’, ‘사육 또는 배양종’, ‘생태계’, ‘현지외 보전’, ‘유전물질’, ‘유전자원’, ‘서식지’, ‘현지 내 상태’, ‘현지내 보전’, ‘보호구역’, ‘지역경제통합기구’, ‘지속가능한 이용’, ‘기술’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16) IUCN, 국립생물자원관 역, p. 29.

17) 일부는 중국이 협상문안에 유전자원만을 명시한 것이 초기 문안의 실수로 판단된다는 견해(박원석, p.9)가 존재하는데, 한-중 FTA 제15.17조 4항에서 “다자 협정 또는 각 당사국의 자국 법률의 향후 발전에 따라,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관한 관련 사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파생물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국이 모두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경우에, 나고야의정서 체제의 해석이 양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파생물을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 박원석, 각주1).

19) 나고야의정서 제7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국내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또는 승인과 참여에 따라 접근되고,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보장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20) 중국에서 토착지역공동체라는 단어는 정치적으로 초민감 단어이고, 식민주의적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소수민족을 토착지역공동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Xuehua Han, 「한·중간 유전자원 관련 통상분쟁 대응방안 연구-제약 및 한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최종보고서, 국립생물자원관, 2015년, p. 61. 각주 130번;薛达元, 秦天宝, 蔡蕾, 遗传资源相关传统知识获取与惠益分享制度研究, 中国环境科学出版社, 2012年, 第60页.

21) 박원석·최원목, 최종보고서, 2011, 환경부, p.51.

한 요건과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나고야의정서에 서명 및 비준을 하지 않아 당사국이 아니며, 한국은 서명국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나고야의정서를 언급한 것으로 두 국의 나고야의정서 가입의지가 확인된다.

3항은 “각 당사국의 국제적 권리와 의무 및 자국 법에 따라,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공평한 공유를 증진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나고야의정서 제5조가 “유전자원 이용 및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획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반영된 조항으로 판단된다.

4항은 “다자 협정 또는 각 당사국의 자국 법률의 향후 발전에 따라,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관한 관련 사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하여, 나고야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 논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5항은 “양 당사국은 특허와 그 밖의 지식재산권이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며, 그러한 권리들이 협약의 목적을 지원하며 그에 역행하지 아니하도록 국내 법률과 국제법에 따라 협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4항과 5항은 명확한 내용을 지적하지 않고, 향후 논의가능성을 열어두고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중국 상무부가 생물다양성협약을 근거로 TRIPs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는 점²²⁾과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유전자원 출처 공개 및 특허 부여와 관련하여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조약의 문구와 차이가 나는 점이 특징이다.

22) 유예리, 225쪽.

〈중국 기체결 FTA의 관련 조항 비교〉

중-뉴질랜드 FTA (2008.1.1. 발효)	중-페루 FTA (2010.3.1. 발효)	중-코스타리카 FTA (2011. 8. 1. 발효)	중-스위스 FTA (2014. 7. 1. 발효)	한-중 FTA (2015 발효 예정)
CHAPTER 12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165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CHAPTER 11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145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CHAPTER 10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111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CHAPTER 11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11.9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CHAPTER 15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15.17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Subject to each Party's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 Parties may establish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1. The Parties recognize the contribution made by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to scientific, 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2. The Parties acknowledge and reaffirm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established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dopted on June 5th, 1992, and encourage the effort to establish a mutually suppor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1. The Parties recognize the contribution made by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to scientific, 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2. The Parties acknowledge and reaffirm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dopted on 5 June 1992 and encourage the effort to enhance a mutually suppor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1. The Parties recognise the contribution made by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to scientific, 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2. The Parties acknowledge and reaffirm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dopted on 5 June 1992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the "Convention") and respect the requirements in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1. The Parties recognize the contribution made by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to scientific, 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2. The Parties acknowledge and reaffirm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dopted on 5 June 1992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the "Convention") and respect the requirements in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중-뉴질랜드 FTA (2008.1.1. 발효)	중-페루 FTA (2010.3.1. 발효)	중-코스타리카 FTA (2011. 8. 1. 발효)	중-스위스 FTA (2014. 7. 1. 발효)	한-중 FTA (2015 발효 예정)
	Diversity, regarding genetic resources and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Diversity, regarding genetic resources and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especially those on prior informed consent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The Parties encourage the effort to enhance a mutually suppor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regarding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3. Subject to each Party'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national legislation, the Parties may establish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3. Subject to each Party'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domestic laws, the Parties may adopt or maintain measures to promote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share equitably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of traditional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relevant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in conformity with what is established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3. Subject to each Party's internation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domestic laws, the Parties may adopt or maintain measures to promote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3. Subject to each Party's internation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domestic law, the Parties may adopt or maintain measures to promote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중-뉴질랜드 FTA (2008.1.1. 발효)	중-페루 FTA (2010.3.1. 발효)	중-코스타리카 FTA (2011. 8. 1. 발효)	중-스위스 FTA (2014. 7. 1. 발효)	한-중 FTA (2015 발효 예정)
	<p>4. Subject to future developments of national legislation, the Parties agree to further discuss the disclosure of origin or source of genetic resources and/or prior informed consent obligations in patent applications.</p>	<p>4. Subject to future developments of domestic laws and the outcome of negotiations in multilateral fora, the Parties agree to further discuss the disclosure of origin or source of genetic resources; and/or prior informed consent obligations in patent applications; and the grant of a patent for an invention that involves or relies on genetic resources, when such resources were acquired or exploited without complying the relevant domestic laws or regulations.</p>	<p>4. The Parties may require that patent applicants should indicate the source of a genetic resource and, if so provided by the national law, traditional knowledge, to which the inventor or the patent applicant has had access, insofar as the invention is directly based on this resource or this knowledge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p>	<p>4. Subject to future developments of multilateral agreements or their respective domestic legislations, the Parties agree to further discuss relevant issues on genetic resources.</p>
			<p>5. If a patent application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4, the Parties may set a time limit by which the applicant must correct the defect. The Parties may refuse the application or consider it withdrawn if the defect according to this paragraph has not been corrected within the set time limit.</p>	<p>5. The Parties, recognizing that paten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have an influen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hall cooperate in this regard subject to 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ensure that such rights are supportive of and do not run counter to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p>

중-뉴질랜드 FTA (2008.1.1. 발효)	중-페루 FTA (2010.3.1. 발효)	중-코스타리카 FTA (2011. 8. 1. 발효)	중-스위스 FTA (2014. 7. 1. 발효)	한-중 FTA (2015 발효 예정)
			<p>6. If it is discovered after the granting of a patent that the application failed to disclose the source or that intentionally false information was submitted, or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ere violated, the Parties may provide for appropriate legal consequences.</p>	

〈한국의 기체결 FTA 관련 조항 비교〉

한-EU (2011.7.1. 잠정발효)	한-페루 (2011.8.1.발효)	한-콜롬비아 (2014.4. 국회비준완료)	한-호주 (2014.12.12. 발효)	한-뉴질랜드 (2015.3.23. 서명)	한-중 (2015.2.25.가서명)
제10장 지적재산 제 10.40 조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제7장 지적재산권 제 17.5 조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제16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 16.5 조 생물다양성	제18장 환경 제 18.8 조 협력	제11장 지적재산권 제11.10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제15장 지적재산권 제 15.17 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1. 자신의 법령을 조건으로, 양 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현하고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 보존 및 유지하고,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소유자의 참여와 승인 하에 더욱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	1.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 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및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각료선언(WT/MIN(01)/DEC/1) 제19 항을 인정한다.	1.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그리고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각료 선언 (WT/MIN/(01)DEC/1) 제19항을 인정한다.	1.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제 2 항과 제 3 항에 규정된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통하여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각 당사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또는 민간전승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립할 수 있다.	1. 양 당사국은 과학, 문화 및 경제 발전에 대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의 기여를 인정한다.
2. 양 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관련 다자간 토론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가. 세계지적재산기구에서, 생물다양성과	2. 양 당사국은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기여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과	2.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 전통지식, 그리고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혁신 및 관행이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바의	2. 협력분야는 환경 법과 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 기후변화 체제의 무역 관련 측면, 무역관련 환경문제 및 생물다양성의 무역관련 측면을 포함할 수	2. 양 당사국은 1992년 6월 5일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에서 창설된 원칙을 인정하고 재확인하며,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p>한-EU (2011.7.1. 잠정발효)</p>	<p>한-페루 (2011.8.1.발효)</p>	<p>한-콜롬비아 (2014.4. 국회비준완료)</p>	<p>한-호주 (2014.12.12. 발효)</p>	<p>한-뉴질랜드 (2015.3.23. 서명)</p>	<p>한-중 (2015.2.25.가서명)</p>
<p>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의 틀 내에서 다루어지는 문제 나, 세계무역기구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생물다양성 협약(이하 "생물다양성 협약"이라 한다) 간의 관계와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혜택공유에 관한 국제체제에 관련된 문제</p>	<p>전통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지국 법령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용을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투명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p>	<p>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한다. 지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며, 각 당사국은 지국법령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투명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p>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p>	<p>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요건, 특히 사전통지 합의에 관한 요건과 이익의 공평하고 공평한 공유를 존중한다.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협약 간의 상호 지지적 관계를 제고하는 노력을 장려한다.</p>	<p>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요건, 특히 사전통지 합의에 관한 요건과 이익의 공평하고 공평한 공유를 존중한다.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협약 간의 상호 지지적 관계를 제고하는 노력을 장려한다.</p>
<p>3. 제2항에 언급된 관련 다자간 논의의 종결 이후, 양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다자간 논의의 결과 및 결론에 비추어 무역위원회에서 이 조를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무역위원회는 그 검토결과에 대해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p>	<p>3. 지국 법령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현하고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하고,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소유자의 참여와 승인하에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보다</p>	<p>3. 지국 법령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현하고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하고,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소유자의 참여와 승인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p>	<p>3. 협력활동은 사람과 정보의 교환, 무역협정의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공유, 관련 지역 및 국제 포럼·학회 및 세미나에서의 협력과, 공동연구 또는 합작사업의 개발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p>	<p>3. 각 당사국의 국제적 권리와 의무 및 자국 법에 따라,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공평한 공유를 증진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p>	<p>3. 각 당사국의 국제적 권리와 의무 및 자국 법에 따라,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공평한 공유를 증진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p>

한-EU (2011.7.1. 잠정발효)	한-페루 (2011.8.1.발효)	한-콜롬비아 (2014.4. 국회비준완료)	한-호주 (2014.12.12. 발효)	한-뉴질랜드 (2015.3.23. 서명)	한-중 (2015.2.25.가서명)
<p>광범위한 적용을 증진한다.</p> <p>4.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제공을 통해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기반한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p> <p>가. 관련 정보를 담고 있고 대중이 접근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p> <p>나. 적절한 심사기관에 서면으로 신청기술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p> <p>5.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시안을 다루는데 있어, 지적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WPO 정부간위원회,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 및 그 밖의 모든 적절한 협의체에서의 논의에 대한 견해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다.</p>	<p>증진한다.</p> <p>4.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기반한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p> <p>가. 관련 정보를 담고 있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p> <p>나. 적절한 심사기관에 서면으로 신청기술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p> <p>5.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시안을 다루는 데 있어, 지적재산과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 간 위원회, 세계 무역기구 지적재산권이사회 및 그 밖의 모든 적절한 포럼에서의 논의에 대한 견해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다.</p>	<p>증진한다.</p> <p>4.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기반한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p> <p>가. 관련 정보를 담고 있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p> <p>나. 적절한 심사기관에 서면으로 신청기술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p> <p>5.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시안을 다루는 데 있어, 지적재산과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 간 위원회, 세계 무역기구 지적재산권이사회 및 그 밖의 모든 적절한 포럼에서의 논의에 대한 견해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다.</p>	<p>증진한다.</p> <p>4.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기반한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p> <p>가. 관련 정보를 담고 있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p> <p>나. 적절한 심사기관에 서면으로 신청기술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p> <p>5.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시안을 다루는 데 있어, 지적재산과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 간 위원회, 세계 무역기구 지적재산권이사회 및 그 밖의 모든 적절한 포럼에서의 논의에 대한 견해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다.</p>	<p>증진한다.</p> <p>4.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기반한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p> <p>가. 관련 정보를 담고 있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p> <p>나. 적절한 심사기관에 서면으로 신청기술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p> <p>5.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시안을 다루는 데 있어, 지적재산과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 간 위원회, 세계 무역기구 지적재산권이사회 및 그 밖의 모든 적절한 포럼에서의 논의에 대한 견해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다.</p>	<p>4. 다자 협정 또는 각 당사국의 자국 법률의 향후 발전에 따라,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관한 관련 시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p> <p>5. 양 당사국은 특허와 그 밖의 지식재산권이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며, 그러한 권리들이 협약의 목적을 지원하며 그에 역행하지 아니하도록 국내 법률과 국제법에 따라 협력한다.</p>

<p>한-EU (2011.7.1. 잠정발효)</p>	<p>한-페루 (2011.8.1.발효)</p>	<p>한-콜롬비아 (2014.4. 국회비준완료)</p>	<p>한-호주 (2014.12.12. 발효)</p>	<p>한-뉴질랜드 (2015.3.23. 서명)</p>	<p>한-중 (2015.2.25.7서명)</p>
<p>6. 다자 협정 또는 양국 각각의 국내 법령의 추후 진전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관련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p>		<p>6.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을 인정하고, 다자 협정 또는 자국 법령의 향후 발전에 따라 유전자원에 관한 관련 사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p>			

3.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 공개 요건

유전자원을 이용한 특허 출원 시 해당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요건은 나고야의정서와 WTO의 충돌가능성에 대하여 가장 많이 논의된 쟁점이다. 이는 나고야의정서의 ABS체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용된 유전자원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핵심적인데, TRIPs협정 제29조에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에 대한 특허의 경우 출원인에게 PIC 및 MAT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물다양성협약/나고야의정서의 ABS이행 실현을 위해서, 발명에 이용된 유전자원의 원산국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권 부여를 거절하게 되면, 이는 특허요건 외 추가적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TRIPs와 나고야의정서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일본은 “생물다양성협약과 TRIPs협정은 저촉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호보완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EU는 “생물다양성협약과 TRIPs협정이 저촉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알바니아, 브라질, 중국 등 개발도상국은 생물다양성협약과 TRIPs는 본래 저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다양성협약을 반영한 형태의 TRIPs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알바니아, 브라질,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회람을 요청한 2008년 7월, 「TRIPs 관련 이슈에 관한 세부원칙안(Draft Modalities for TRIPs Related Issue)(TN/C/W/52)」에 반영되어, TRIPs/CBD 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²³⁾

또, 이는 2011년 4월에 「TRIPs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간 상호보완성 증진을 위한 결정 초안(Draft decision to enhance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TN/C/W/59)」²⁴⁾에서 다시 다루어졌다.²⁵⁾ 중국은 이 결정

23) 허인, 심현주, “유전자원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쟁점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리, 2013, pp. 99-100.
24)

Article 29bis <i>Disclosure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and/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i> (TN/C/W/54)	제29조 bis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1. For the purposes of establishing a mutually supportive relationship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Members shall have regard to the objectives, definitions and principles of this Agreement,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particular its provisions on prior informed consent for access and 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1. TRIPs와 생물다양성협약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TRIPs, 생물다양성협약,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정의 그리고 원칙을 유념하며, 특히 접근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사전통보승인 조항을 유념한다.
2.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application involves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⁴ and/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Members shall require applicants to disclose: (i) the	2. 특허 출원의 주된 대상의 유전자원 그리고/혹은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과 관련 있는 경우, 회원국들은 출원자가 다음을 공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i) 그러한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 즉, 그러한

초안 작성 및 회람 요청에 참여하였고,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가 의무화되지 않고서는 TRIPs 제29조는 불완전하며, 특히 출원 시 출처공개를 할 법적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 유전자원 그리고/혹은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오용을 방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이 기체결한 FTA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중-페루 FTA에서는 제145조 4

<p>Article 29bis <i>Disclosure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and/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TN/C/W/54)</i></p>	<p>제29조 bis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 공개</p>
<p>country providing such resources, that is,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resources or a country that has acquired the genetic resources and/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in accordance with the CBD; and, (ii) the source⁵ in the country providing the genetic resources and/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Members shall also require that applicants provide a copy of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⁶ (IRCC). If an IRCC is not applicable in the providing country, the applicant should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regarding compliance with prior informed consent and access and 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as required by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country providing the genetic resources and/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that is,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resources or a country that has acquired the genetic resources and/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in accordance with the CBD.</p>	<p>유전자원의 원산국 혹은 그러한 유전자원 그리고/혹은 관련 전통지식을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서 획득한 국가; 그리고 (ii) 유전자원 그리고/혹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국가의 원천. 또한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준수 증명서(IRCC)'의 사본 1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유전자원 제공국이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출원인은 사전통보승인 및 접근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공유 준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정보는 유전자원 제공국, 즉, 그러한 유전자원의 원산국 혹은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서 유전자원 그리고/혹은 관련 전통지식을 획득한 국가의 국내법령에 따라 얻은 유전자원 그리고/혹은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이다.</p>
<p>3. Members shall publish the information disclos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jointly with the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or the grant of patent, whichever is made first.</p>	<p>3. 회원국들은 이 규정 2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출원서 혹은 특허증 중 먼저 발급된 것과 함께 공표해야 한다.</p>
<p>4. Members shall put in place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measures so as to permit effective action against the non-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set out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Patent applications shall not be processed without completion of the disclosure obligations set out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p>	<p>4. 회원국들은 이 규정 2항에서 정한 의무 미준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특허출원은 이 규정 2항에서 정한 의무 공개를 완수하지 않고서는 진행되어서는 아니 된다.</p>
<p>5. If it is discovered after the grant of a patent that the applicant failed to disclose the information set out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or submitted false and fraudulent information, or it is demonstrated by the evidence that the access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violated the relevant national legislation of the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and/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that is,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resources or a country that has acquired the genetic resources and/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in accordance with the CBD, Members shall impose sanctions, which may include administrative sanctions, criminal sanctions, fines and adequate compensation for damages. Members may take other measures and sanctions, including revocation,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set out in paragraph 2.</p>	<p>5. 만약 출원자가 이 규정의 2항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특허가 허여된 것이 발견된다면, 혹은 허위 혹은 기만 정보가 제출된 경우에, 혹은 유전자원 그리고/혹은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이 유전자원 그리고/혹은 전통지식 제공국(즉, 그러한 자원의 원산국 혹은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서 유전자원 그리고/혹은 관련 전통지식을 획득한 국가)의 관련 국내법령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증명된 경우, 회원국들은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재조치는 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 벌금 그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포함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이 규정의 2항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폐지를 포함한 기타 조치와 제재를 취해야 한다.</p>

25) 이 결정초안은 2011년 4월에 회람된 이후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 않아, 법적구속력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 결정초안이 법적구속력을 획득할 때까지 여전히 특허 출원 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 공개과 관련하여, 각 국가의 입장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항에서 당사국은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및/혹은 사전통보승인이 특허 출원에서 추후 논의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중-코스타리카 FTA에서도 제111조 4항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나아가 관련국내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이 이용된 경우 특허 허여와 관련해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 이후에 체결된 중국-스위스 FTA에서도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할 것과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출원이 거절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FTA에서는 제15.17조 4항에서 다자 협정 또는 각 당사국의 자국 법률의 향후 발전에 따라, 양 당사국이 유전자원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며, 5항에서 특허와 기타 지적재산권이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며, 그러한 권리들이 협약의 목적을 지지하며 그에 역행하지 아니하도록 국내 법률과 국제법에 따라 협력한다고 하여,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²⁶⁾

4. 한국과 중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중첩문제

(1) 한국과 중국의 월경성(Transboundary)상황

한국과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로, 지리적·역사적으로 긴밀하게 교류해왔다. 이는 두 국가의 관할지역 내에 공통종이 서식한다는 점과 한의학과 중의학이 역사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발전하였다는 점이 나고야의정서 상 문제가 될 수 있다. 공통종이 서식한다는 점은 양자간 ABS방식에서 하나의 제공국 혹은 토착민족공동체(ILC)이 이익공유의 대상이 되므로, 공통된 특정 유전자원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경쟁을 초래할 수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²⁷⁾ 예컨대, 한국의 ‘고

26) 중국은 2008년 전리법 제3차 개정을 통해 특허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유전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조항을 통해 유전자원에 관한 발명을 출원시에 그 합법성을 증명하고 출원서류에 그 직접적 유래 및 원시적 유래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여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꾀한다. ... 중국은 한의학 및 풍부한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어 향후 FTA 등에서 중국이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선희·이현희, “한중 FTA를 대비한 양국의 지적재산권법제 비교연구”, 한중 FTA대비 관련 법제연구(III), 한국법제연구원, 2013년 6월 14일, p. 38.

27) 월경성 상황에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뿐 아니라 유전자원이 종종 특정 국가의 고유자원이 아니거나 하나의 ILC가 보유한 자원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유전자원은 흔히 하나 이상의 국가나 심지어 하나 이상의 지리적 영역에서 발견되며, 심지어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할 수 있는 다수의 ILC가 종종 동일한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간 ABS방식은 하나의 제공국/ILC가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부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다. 게다가, 양자간 ABS방식은 동일한 유전자원 및 이러한 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 제공국/ILC 간 경쟁을 초래하여 MAT협상 시 입지를 약화시키고 ABS요건과 관련하여 “바닥치기 경쟁(race to the bottom)”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월경성 상황에 대응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때로 다자간 이익공유 방식이 이러한

려인삼'과 중국의 '길림인삼'은 공통종으로서 경쟁 관계에 있다. 나아가, 문제가 되는 점은 한의학 과 중의학이 역사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발전해왔다는 점인데,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전통의학에 대하여 종주국을 주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은 전통문화의 종주권에 대한 갈등을 여러 차례 빚었는데, 한국은 '강릉 단오제'를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시켰는데, 이에 대하여 중국이 단오제가 중국의 전통문화라고 주장하여, 논란을 제기하였던 바 있다. 또, 한국은 <동의보감>을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록하였지만, 중국이 뒤따라 <본초강목> <황제내경> 등의 전통의학지식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원류'가 누구인지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²⁸⁾ 또, 중국은 '조선족 농락무'를 자국의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키면서 아리랑까지 중국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한국의 정부와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²⁹⁾

또, 중국은 자생하는 생물자원의 51%가 자국 원산이며 백두산에 자생하는 1%만이 한국과 공동 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지식 소유권도 주장하고 있어 중국 의학서적에 기록된 한약에 대한 이익공유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³⁰⁾

(2) 한의학 및 중의학 문제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호 문제는 농업지식, 과학지식, 기술지식, 환경지식, 의약 및 치료를 포함한 의료지식, 생물다양성관련지식, 민간전승표현물, 지리적 표시, 상징 및 이용 가능한 문화재지식이 포함된다.³¹⁾ 특히, 이 중에서 전통의약지식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제약 산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도 이 분야에서 참여한 이익이 대립되고 있다. 한의학은 고대의약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일본, 중국과 교류하며 발전해온 것으로, 3국의 전통의학은 중첩되

월경성 상황을 해결하는 데 더 적합하고 공정하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CBD 제15조에서 다자간 ABS 방식보다 양자간 ABS방식의 적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다형성이란 경제적 가치가 동종 표본 간 내부 유전적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타 국가가 쉽게 "무임승차(free-riding)"하면서 단지 현지 내 동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익공유의 수혜를 받는다면, ABS체계를 구축한 국가는 불만을 품을 수 있다. 토마스 그레이버 외, 「나고야의정서 해설서, IUCN, p. 19.

28) "한약·기체조도 중국에 사용료 지불? 전통지식 소유권, 발등에 불", 한겨레, 게재일: 2012년 2월 20일.

29) 이민호, "현대 중국의 전통의약 무형문화유산 현황 및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제17권 제2호 통권 제32호, 2011년 8월, p. 18.

30) "한중FTA타결로 중국 ABS에 보다 주목하는 '동아ST', 중국 관련 현행 법률 파악·대비책 마련에 주력", 약사공론, 게재일: 2015년 2월 9일.

31) 고광국, 「나고야의정서가 전통지식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책, 과학기술법연구, p.307.

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허준과 이제마가 우리 전통의학의 동의(東醫)라고 칭했듯이 독창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해왔으므로, 중국이 동북아지역의 전통의학에 대하여 종주권을 주장하는 경우 마치 한국이 생물해적해위(Bio-piracy)를 행한 것처럼 되며, 중국이 관련 바이오산업에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중국은 중의약을 보존하기 위해 특허를 부여하고, DB화를 상당 부분 진행하는 등 보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보는 향후 제3자가 해당 내용에 대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신규성 및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 허여를 위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해 질 수도 있는 바, 문서화 및 DB화를 추진하고, 기존 한의학 지식에 신규성 및 진보성이 더해진 경우 적극적으로 특허를 부여하고, 이러한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³²⁾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부터 독자적인 의약·의술이 발달되어 있었고, 삼한시대·고려시대에는 민간경험을 통한 약방의학이 발달되었으며, 여기에 중국 의서들을 받아들여 새롭게 체계화시켰다. 조선시대에는 독자적인 의학이 수립되어 지금까지의 한의학이 발달되어 왔으며 또한 우리의 유전자원인 약초와 의서를 비롯하여 많은 민간비법 등의 전통의약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의약지식 보호에는 지식재산권적 보호, 그 이외 입법적 보호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전통의약지식의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³³⁾

(3) 한·중 FTA 지식재산권 장의 규정을 통한 보호

중국과 한의학에 대한 종주권 논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식재산권의 규정을 통한 보조적 보호도 필요하다. 특히, 특허권 또는 상표권 등의 방법으로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³⁴⁾

1) 상표권차원의 보호

상표법은 제1조에 따르면,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32) 손지영, Xuehua Han, 「중국의 유전자원 ABS체제 연구 및 시사점: 나고야의정서 ABS관련 중국법제 검토를 중심으로」, 제7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p. 108.

33) 고광국, p. 308.

34) WIPO, Matter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 an Overview, WIPO/GRTKF/IC/1/3, 27(Mar. 16, 2001); 고광국, p. 319.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³⁵⁾ 한-중 FTA 제15.11 조에서 상표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상표 및 서비스의 상표권자의 권리를 부여하고, 제3항에서 배타성을 인정하고, 제4항에서 기만을 목적으로 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전통의약 보유자가 획득하고 있는 상표권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예컨대 국의 전통의약품 상표 중 이명래 고약, 부채표 활명수 등이 있고, 고려수지침, 니시건강법 과 같은 것도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되면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³⁶⁾ 고려인삼도 상표권을 국내외에 출원 및 등록하였으므로,³⁷⁾ ‘고려인삼’이라는 상표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기만을 목적으로 한 유사상품의 등록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제15.13조에서는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등록으로 보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동 조항은 유명 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 유명상표 목록에 등재될 것 또는 유명 상표로 사전 인정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명상표를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먼저 등록을 하더라도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한국의 “정관장”상표를 과거 홍콩지역 고려삼 수입상(고려삼중심유한공사: 피터추)이 홍콩, 중국, 마카오 3개국에 공사몰래 선 등록을 했었는데, 정관장 측의 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2001년 10월 최종판결로 종료됐었던 사례가 있다.³⁸⁾

35) 상표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6) 고광국, p. 323.

37) “고려인삼 지리적표시등록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게재일: 2008년 7월 14일,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15>

38) 특허청, 「중국 정관장 상표권 반환 추진 개요」, www.kipo.go.kr. (검색일: 2015년 5월 5일).

<p>Article 15.11 Trademarks Protection</p>	<p>제15.11조 상표 보호</p>
<p>1. The Parties shall grant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to trademark right holders of goods and services.</p>	<p>1. 양 당사국은 상품과 서비스의 상표권자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한다.</p>
<p>2. Neither Party may require, as a condition of registration, that signs be visually perceptible, nor may either Party deny registration of a trademark solely on the grounds that the sign of which it is composed is a sound.</p>	<p>2.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그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p>
<p>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owner of a registered trademark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prevent all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using in the course of trade identical or similar signs for goods or services that are identical or similar to those goods o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the owner's trademark is registered, where such use would result in a likelihood of confusion. In the case of the use of an identical sign, for identical goods or services, a likelihood of confusion shall be presumed. The rights described above shall not prejudice any existing prior rights, nor shall they affect the possibility of Parties making rights available on the basis of use.</p>	<p>3.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모든 제 3 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선행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양 당사국이 사용에 기반하여 권리를 이용 가능하게 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p>
<p>4.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signs having the nature of deception shall not be used as trademarks and shall not be registered as trademarks.</p>	<p>4. 각 당사국은 기만의 속성을 가진 표지는 상표로 사용되지 아니하며 상표로 등록되지 아니함을 규정한다.</p>
<p>Article 15.13 Well-Known Trademarks</p>	<p>제15.13조 유명 상표</p>
<p>1. No Party may require as a condition for determining that a trademark is well-known that the trademark has been registered in the Party or in another jurisdiction, included on a list of well-known trademarks, or given prior recognition as a well-known trademark.</p>	<p>1.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상표가 유명 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 유명 상표 목록에 등재될 것 또는 유명 상표로 사전 인정될 것을 요구할 수 없다.</p>
<p>2. The protection according to this Article shall not be limited to identical or similar goods or services where the registered trade mark is well known in the respective Party and</p>	<p>2. 이 조에 따른 보호는 등록 상표가 각 당사국에서 유명하고, 그 유명 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상품 및 서비스와 그 등록</p>

Article 15.13 Well-Known Trademarks	제15.13조 유명 상표
provided that use of a trademark which is a reproduction, an imitation or a translation, of the well-known trademark above in relation to those goods or services would indicate a connection between those goods or services and the owner of the registered trademark and provided that the interests of the owner of the registered trademark are likely to be damaged by such use.	상표권자와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그 등록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 국한되지 아니한다.
3.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ppropriate measures to refuse or cancel the registration and prohibit the use of a trademark that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well-known trademark, for related goods or services, if the use of that trademark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be misleading, and the interests of the owner of the well-known mark are likely to be damaged by such use.	3.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그 유명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2) 특허권 차원의 보호

한국 특허법에서 특허의 대상은 발명이며, 이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의 것, 즉 인간이 창작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말한다. 발명은 신규성이 있고(특허출원 시점에서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을 것), 진보성이 있으며(종래 기술보다도 한 단계 진보한 것일 것),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발명은 어느 산업에서도 이용 가능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이용 가능한 창작물은 발명에서 제외된다.

한-중 FTA 제15.15조에서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여 특허권을 규정하고 있다. 의약발명에 대하여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특허법은 의약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하며, 우리의 경우 의약품 그 자체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제조방법은 별론으로 하고, 약품 자체에 대해서 198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전통의학에 대해서는 전통 치료방법은 일반적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특허될 수 없으며, 전통의약은 존재형태에 따라 다른 요건을 요한다. 비법형태의 전통의약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하고 비법형태로 내려오는 전통의약의 경우 신규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취득이 가능하다. 의서에 기재된 전통의약의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기존 한의서, 한약

관련 사전 또는 민간요법에 공지되어 있따 하더라도, 이에 배합비율 등을 달리하거나 새로운 약재를 첨가하여 약리효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특허가 허용될 수 있다.³⁹⁾

중국 특허법은 발명(inventions), 고안(utility models), 의장(designs)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며, 발명과 실용신안은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ness), 산업상 이용가능성(practical application)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통의약에 대해서 신규성(출원전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출원이 없어야 함), 창조성(의약품에서의 진보성, 제약방법에서의 진보성, 새로운 효능으로서의 진보성)이 존재해야 하며,⁴⁰⁾ 다른 전통의약 종사자가 이를 보고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고도 자세하게 발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타라의 특허법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중국은 특허법의 개정으로 약품이나 의약품도를 특허의 대상에 포함시켜, 전통의약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¹⁾

중국의 우황청심환과 한국의 우황청심원이 중주권 논란이 될 수 있는 특허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황청심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까지도 올라가는데, 조선시대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중풍으로 졸도해 사람과 사물을 식별하지 못하고, 가래가 끓으며, 말이 고르지 못해 중얼거리는 듯하고 입과 눈이 돌아가고 팔·다리·손·발이 자유롭지 못할 때 쓰는 구급처방약’으로 소개돼있다. 가장 중요한 재료인 우황은 심장의 열을 내리는 경련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사향은 경련을 진정시키고 정신이 들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중국의 우황청심환과 유사하지만, 우황과 사향을 기본으로 여러 약재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조선의 우황청심원은 약재가 더 많고 약재의 조합비도 조금 다르다. 비슷한 재료라도 질에 따라 약효의 차이가 컸는데, 조선 우황의 품질을 최고로 쳤기 때문에 조선의 우황청심원이 중국의 우황청심환보다 인기가 높았다. 현재 우황청심원을 만드는 국내제약사가 20곳이 넘으며, 최근에는 우황청심원 현탁액이 출시되어 마시기 편하고 효과도 빠른 제품으로 젊은 층들에게도 인기가 좋다.⁴²⁾

그런데 제법을 달리하여,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어 특허를 허용한다는

39) 고광국, p. 332.

40) XuehuaHan, p.27.

第二十二條 授予專利權的發明和實用新型，應當具備新穎性、創造性和實用性。

新穎性，是指該發明或者實用新型不屬於現有技術；也沒有任何單位或者個人就同樣的發明或者實用新型在申請日以前向國務院專利行政部門提出過申請，並記載在申請日以後公布的專利申請文件或者公告的專利文件中。

創造性，是指與現有技術相比，該發明具有突出的實質性特點和顯著的進步，該實用新型具有實質性特點和進步。

實用性，是指該發明或者實用新型能夠製造或者使用，並且能夠產生積極效果。

本法所稱現有技術，是指申請日以前在國內外為公眾所知的技術。

41) 김정선, 이승우, 김윤경, 전개논문, p. 119.

42) “한국인의 중풍 구급약 우황청심원”, 헬스조선, 게재일: 2014년 12월 14일.

한국과 중국의 특허법의 입장에 따르면, 한국의 우항청심원은 중국의 우항청심원과 제법이 다르
고, 최근 한국에서 개발된 우항청심원 현탁액의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Article 15.15 Patents Protection	제 15.15 조 특허 보호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patents shall be available for any inventions, whether products or processes,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at they are new, involve an inventive step, and are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1. 제 2 항과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는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u>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만 한다.</u>
2. Each Party may exclude from patentability inventions, the prevention within its territory of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which is necessary to protect <i>ordre public</i> or morality, including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o avoid serious prejudice to the environment, provided that such exclusion is not made merely because the exploitation is prohibited by its law.	2. 각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3. Each Party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a)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and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3.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그리고 나.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 및 동물 그리고 비생물적이거나 미생물적인 방법 외에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는 본질적으로 생물적인 방법
4. Each Party may provide limited exceptions to the exclusive rights conferred by a patent, provided that such exceptions do not unreasonably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patent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tent owner, taking account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ird parties.	4.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Each Party may provide an applicant with accelerated examination for the patent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n which topic the Parties agree to enhance cooperation.	5. 각 당사국은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출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해 양 당사국은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한다.

3) 저작권 차원의 보호

한약은 제한적으로 저작권으로도 보호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창작자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전통지식에 해당하는 전통의약에 관하여 예전부터 내려오는 의서는 보호기간의 만료로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전통의약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결과를 서적 등으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⁴³⁾

<p>Article 15.6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p>	<p>제 15.6 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p>
<p>1. Without prejudice to the obligations set out in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each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and this Chapter4 grant and ensur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to the authors of works and to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for their works, performances, phonograms and broadcasts, respectively.</p>	<p>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국제협정에서 규정한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자국의 법과 규정 및 이 장에 따라,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에 대해 각각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적절하고 유효한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한다.</p>
<p>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uthors,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have th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reproductions of their works, performances, phonograms and broadcasts, in any manner or form.</p>	<p>2.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자신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p>
<p>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term of protection of broadcast shall not be less than 50 years after the taking place of a broadcasting, whether this broadcasting is transmitted by wire or over the air, including by cable or satellite.</p>	<p>3. 각 당사국은 방송의 보호기간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해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50 년 미만인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규정한다.</p>

43) 김정선, 이승우, 김윤경, “세계시장에서 한약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입법례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14집 제1호, pp. 6-7.

IV. 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유전자원을 수입하고 있어, 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후 중국 측의 이익공유 요구로 바이오산업분야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한-중 FTA체결로 제약산업 등 천연물약제품 등 제약산업의 원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중FTA와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우리 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진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유전자원부국으로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한국과는 공통종 경쟁문제 및 한의학과 중의학의 종주권 논란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의 대응책마련이 시급하다. 한-중FTA 제15.17조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① 파생물 포함 여부나 나고야의정서와 달리 민간 전승물도 포함하고 있는 물적 적용범위, ② 유전자원이 관계된 특허 출원시 출처 공개, ③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특허 취소 등의 여러 쟁점이 남아있으며, 협상여지가 남겨져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익에 맞는 협상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낮다고 평가되는 ① 상표권적 차원의 보호, ② 특허권적 차원의 보호, ③ 저작권적 차원의 보호 전략을 세워야할 것이다.

한·중 FTA 성과와 과제에 대한 조망

제 5 주제

한·중 FTA의 주요쟁점과 대응과제

주제발표 : 문병철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토 론 : 김재준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기획단)

한·중 FTA의 주요쟁점과 대응과제

－ 국회차원의 고려사항을 중심으로¹⁾

문병철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²⁾

목 차

1. 처음에
2. 한·중 FTA 개관
 - (1) 한·중 교역 현황
 - (2) 한·중 FTA 양허 현황
 - (3) 한·중 FTA의 정치적 의미
3. 한·중 FTA의 효과적 측면
 - (1) FTA의 단기적 효과
 - (2) 대중국 수출입 특화품목군별 효과
4. 한·중 FTA의 통상정책적 측면
 - (1) 낮은 단계의 FTA와 의미
 - (2) 중국의 국유기업 문제
 - (3) 한·중 FTA 피해대책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 정비
 - (4) 한·중 FTA의 국내적 수용과 국내제도 정비
 - (5) 동시다발적 FTA와 한·중 FTA
5. 맺으며

1. 처음에

한·중 양국은 2015년 2월 25일 한·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하였다. 양국은 2014년 11월 10일 양국 정상에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안에 대한 기술협의 및 법률검

1) 현재 이 논문은 작성 단계에 있으며,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일 뿐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혀 둡니다.

2)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토 작업을 마치고 협정문(영문본)에 가서명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상대국이다. 2014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입에서 대중국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43%이며, 수출은 1,45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5.36%이고, 수입은 901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7.14% 비중이다.

한·중 FTA 발효 후 20년에 걸쳐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92.2%(11,272 품목), 중국은 90.7%(7,428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중 FTA의 관세철폐 계획은 한·미 FTA(2012)나 한·EU FTA(2011)에 비하여 매우 느리며 또한 그 철폐율이 낮은 수준이다.

FTA의 효과는 양극단으로 재단할 수 없다. FTA는 본질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 때문에 양국의 산업은 오직 기술력과 가격에 의한 비교우위의 특화개념으로 무한경쟁에 노출된다. 산업별 경쟁력에 따라 이익을 보는 품목과 손해를 보는 품목이 혼재된다. 더구나 FTA는 양(+)의 무역창출효과 뿐만 아니라 음(-)의 무역전환효과도 유발한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사회주의 경제권과 맺은 개방도가 낮은 FTA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체결된 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구성된 FTA 규범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중 FTA도 많은 피해 산업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기존의 선진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중 FTA가 누적됨으로써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FTA의 효과적 측면과 통상정책적 측면을 국회에서의 고려사항에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2. 한·중 FTA 개관

(1) 한·중 교역 현황

2014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입에서 대중국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43%이며, 수출은 1,45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5.36%이고, 수입은 901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7.14% 비중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였는데, 수출비중은 2000년 10.71%에서 2013년 26.07%, 2014년 25.36%로 증가되었고, 수입비중도 2000년 7.98%에서 2014년 17.14%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년도	전체 수출입(B)			대 중국수출입(A)			비중(A/B)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2014	573,091	525,564	47,527	145,328	90,072	55,256	25.36	17.14
2013	559,632	515,586	44,046	145,869	83,053	62,816	26.07	16.11
2012	547,870	519,584	28,286	134,323	80,785	53,538	24.52	15.55
2011	555,214	524,413	30,801	134,185	86,432	47,753	24.17	16.48
2010	466,384	425,212	41,172	116,838	71,574	45,264	25.05	16.83
2005	284,419	261,238	23,181	61,915	38,648	23,267	21.77	14.79
2000	172,268	160,481	11,787	18,455	12,799	5,656	10.71	7.98
1995	125,058	135,119	-10,061	9,144	7,401	1,743	7.31	5.48
1990	65,016	69,844	-4,828	585	2,268	-1,683	0.90	3.25
1980	17,505	22,292	-4,787	15	26	-11	0.09	0.12

* 비중은 전체 수출입에서 대 중국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

*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중 FTA 양허 현황

양국은 협정 발효 후 20년에 걸쳐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92.2%(11,272 품목), 중국은 90.7%(7,428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즉 한·중 FTA에 의한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은 92.2%이고 중국은 90.7%이다.

한편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의 즉시철폐율은 한국이 4,125 품목으로 33.7%이고, 중국은 958 품목으로 11.7%이다. 그 결과 FTA 이전의 무관세 품목을 함께 감안하면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교역품목 중 한국은 49.9%, 중국은 20.1%의 품목이 무관세로 교역되게 된다.

〈상품 양허 수준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양허유형	한국		중국	
	품목수(비중)	대중국 수입액(비중)	품목수(비중)	대한국 수입액(비중)
즉시철폐	6,108 (49.9)	41,853 (51.8)	1,649 (20.1)	73,372 (44.0)
(무관세)	1,983 (16.2)	33,811 (41.9)	691 (8.4)	64,658 (38.8)
(유관세)	4,125 (33.7)	8,042 (9.96)	958 (11.7)	8,714 (5.2)
5년 철폐	1,433 (11.7)	3,098 (3.8)	1,679 (20.5)	5,830 (3.5)
10년 철폐	2,149 (17.6)	17,330 (21.5)	2,518 (30.7)	31,250 (18.7)
(10년 내)	9,690 (79.2)	62,281 (77.1)	5,846 (71.3)	110,453 (66.2)
15년 철폐	1,106 (9.0)	7,951 (9.8)	1,108 (13.5)	21,917 (13.1)
20년 철폐	476 (3.9)	3,406 (4.2)	474 (5.8)	9,375 (5.6)
(20년 내)	11,272 (92.2)	73,638 (91.2)	7,428 (90.7)	141,744 (85.0)
부분감축	87 (0.7)	2,276 (2.8)	129 (1.6)	10,014 (6.0)
현행관세+TRQ	21 (0.2)	569 (0.7)	-	-
협정배제	16 (0.1)	77 (0.1)	-	-
양허제외	836 (6.8)	4,209 (5.2)	637 (7.8)	14,994 (9.0)
총 합계	12,232 (100)	80,768 (100)	8,194 (100)	166,752 (100)

* 품목수는 HS 2012 한국(HSK 10단위), 중국(HSC 8단위), 수입액은 '12년 수입액 기준

* 자료: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2015. 3.). 관계부처합동

* 공산품과 농수산물만 모두 포함된 양허수준임

(3) 한·중 FTA의 정치적 의미

한·중 FTA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요소도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쪽에서 보면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뒤, 아시아 미사일방어계획(MD, THAAD의 한국 배치)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일본이 참여하자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협상을 강화해야할 전략적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태지역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라는 큰 두 흐름이 있다.

먼저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지역무역협정으로 2006년 발효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FTA(P4: Pacific Four Agreement)에서 기원하는데, 처음에는 경제규모가 작아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8년 3월 미국이 협상 참여

를 선언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1월 ‘21세기 지역무역협정’이라는 기치 하에 TPP 확대 계획을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2008년 8월 호주, 페루, 베트남이 참여하였고,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가 참여하여 회원국이 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2년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였고 일본이 2011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참여의사를 밝히고, 2013년 3월 15일 기존 TPP 참여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TPP에 참여하기로 공식 선언하였다. 이 경우는 세계 제1위와 제3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2012년 말부터 중국이 주도하는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아·태 지역 국가들이 TPP 참여의 이점을 느끼지 못하도록 이들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아·태 지역 경제무역 협력에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다.

〈아태지역에 추진 중인 지역무역협정 현황〉

지역무역협정	의미	참가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주도의 아시아 경제구도에서 배제되지 않으면서 아시아 국가들을 유인하려는 미국의 전략 ○ 수준 높은 21세기 지역무역협정 	현재 미국 포함 11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주도의 아시아 경제통합 ○ 경제협력 뿐 아니라 정치·군사·안보 영역에서의 신뢰구축도 중요 	ASEAN(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 + 6개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한·중·일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의 기반 마련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21개국) ○ 미국과 중국을 모두 포함한 아·태지역 경제공동체 	APEC 21개 회원국 [한국,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ASEAN 6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이,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홍콩, 타이완,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러시아, 베트남, 페루]

3. 한·중 FTA의 효과적 측면

우리는 FTA의 효과에 대하여 주로 거시적 차원의 양극화 논쟁만을 하였다. 이는 한·미 FTA(2012)를 수용하면서 특히 심하였다. 즉 FTA는 “효과가 있다” 또는 “효과가 없다”라는 논쟁이었다. 그러나 이는 FTA에 따른 단일한 이익이 쉽게 도출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이다.

사실은 FTA의 효과는 이처럼 단순하게 도출되지 않는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그 시간계획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는 9,289개의 상품(중국은 6,737개)은 관세라는 보호막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오직 기술력과 가격경쟁에 의한 비교우위의 특화개념으로 무한경쟁의 환경에 노출된다. 이 경우 이익을 보는 품목과 반면에 손해를 보는 품목이 함께 혼재되게 된다. 또한 한 품목 내에서도 무역창출효과라는 양(+)의 효과와 무역전환효과라는 음(-)의 효과가 함께 나타난다.

이에 한·중 FTA 효과에 대한 논쟁은 거시적 양극화 논쟁 보다는 미시적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 품목별 경쟁력에 의한 무역특화지수 분석에 의해 사실상 어떤 산업이 이득(양(+))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또 어떤 산업이 피해(음(-)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이에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정책을, 반면에 경쟁력이 없는 품목에는 피해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1) FTA의 단기적 효과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체계적인 분석은 Viner(1950)가 처음으로 관세동맹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FTA 체결국간의 단기효과로는 무역창출효과인 양(+)의 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인 음(-)의 효과가 있다.

무역창출효과란 FTA로 인해 교역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체결국의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그 결과 FTA 당사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한다. 반면 무역전환효과란 교역장벽의 제거로 인해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상품을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를 말한다.

여기서 FTA의 사회적 후생은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FTA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할 수도 있다. 즉 FTA로 인해 수입선이 수출단가가 낮은 국가로부터 더 높은 국가로 전환되어 사회적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는 대체적으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 보다도 높다고 나온다.

무역창출효과는 수입(수출) 증대의 원인이 FTA 당사국의 품목별 비교우위에 의한 경쟁력의 차이로 발생한다. 후생의 증가를 의미하는 무역창출효과의 구성내역을 보면, 관세의 철폐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국내에서 비교열위인 국내산 제품이 비교우위인 외국산 제품으로 대체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효과와 상대적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효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이는 사실상 국내적으로는 비교열위 제품의 생산 감축을 가져온다. 물론 비교우위 제품은 상대국에서는 생산증대를 가져온다. 이러한 현상은 품목 하나하나 마다 다르게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FTA 효과가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 경우일지라도 그 세부 내용면에서는 수많은 산업에서 생산측면의 구조조정이 유발된다.

(2) 대중국 수출입 특화품목군별 효과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를 이용하여 품목별로 비교우위 여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서 그 상품의 비교우위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³⁾

한국무역협회의 HSK⁴⁾ 2단위의 2013년도 대중국 수출입 Data를 이용하여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하여 이를 구분⁵⁾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무역특화지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이 대중국 수출입에 있어서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이 27개 품목이고, 서로 경합하는 품목이 17개 품목이며, 반대로 중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이 53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3) 무역특화지수(TSI)는 아래 수식과 같이 산출된다.

$$TSI_{ij} = \frac{X_{ij} - M_{ij}}{X_{ij} + M_{ij}}$$

여기서 i=대상국가, j=품목, X_{ij} =한국의 i국가로의 j품목수출 (M=수입)을 의미하며, 품목(i)의 TSI는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이면 순수출, -1이면 순수입 상태를 나타낸다. 즉, 품목(i)의 값이 1에 근접할수록 한국으로부터 대상국(j)으로의 수출이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며, -1에 근접할수록 대상국으로부터의 대한국 수입이 우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 4)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한다.
- 5) TSI 값에 기준하여 한국절대우위, 한국우위, 경합, 중국우위, 중국절대우위의 5개 구간으로 구분한다. 한국절대우위: $1 \geq TSI \geq 0.6$, 한국우위: $0.6 > TSI \geq 0.2$, 경합: $0.2 > TSI > -0.2$, 중국우위: $-0.2 \geq TSI > -0.6$, 중국절대우위: $-0.6 \geq TSI \geq -1$

〈한·중 무역특화지수(TSI)(2013년 기준)〉

	품목 수(HS 2단위)	TSI	비고
한국 절대우위	12 품목	$1 \geq TSI \geq 0.6$	
한국 우위	15 품목	$0.6 > TSI \geq 0.2$	
경합	17 품목	$0.2 > TSI > -0.2$	
중국 우위	21 품목	$-0.2 \geq TSI > -0.6$	
중국 절대우위	32 품목	$-0.6 \geq TSI \geq -1$	
합 계	97 품목		

* HS 2단위 품목 분류는 97품목 임

1)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경쟁우위 품목군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는 특정품목의 특정국으로의 수출이 특정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품목의 대세계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함으로써 해당품목의 수출이 특정국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의미한다.⁶⁾ 이를 가지고 비교우위 여부를 분석해 본다.

한국무역협회의 HSK 2단위의 2013년도 대중국 수출입 Data를 이용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한·중 무역에 있어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보면, 한국 비교우위가 20개 품목, 비교열위가 77개 품목으로 나타난다.

〈한·중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2013년)〉

	품목 수(HS 2단위)	RCA	비고
비교 우위	20 품목	$RCA \geq 1$	
비교 열위	77 품목	$RCA < 1$	
합 계	97 품목		

6) 현시비교우위가 1보다 크면 해당 품목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1보다 작으면 경쟁력이 없음으로 해석된다.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RCA = \frac{X_{ij} / X_i^t}{X_j^t / X^t}$$

여기서 X_{ij} = 한국의 i국가로의 j품목수출, X_i^t = 한국의 i국가로의 총수출이고, X_j^t = 한국의 j품목의 대세계 총수출, X^t = 한국의 대 세계 총수출을 말한다.

2013년도 한·중의 수출입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한 무역특화지수(TSI)와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조합하여 경쟁우위 품목군을 분석해⁷⁾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는 해당품목의 대 중국 수출경쟁력이 한국의 대 세계 수출경쟁력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중 FTA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품목군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대 중국 경쟁우위 품목군〉

(단위: 천 달러)

	품목명(HS 2단위)	대 중국 수출액	대 중국 수입액	TSI	RCA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13,269	2,261	0.709	1.164
17	당류와 설탕과자	147,184	91,212	0.235	1.334
29	유기화학품	15,003,824	2,570,684	0.707	2.316
32	유연·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안료, 페인트, 퍼티, 잉크	904,230	417,194	0.369	1.523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193,743	109,484	0.278	1.598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0,761,235	1,839,411	0.708	1.324
41	원피(모피제외)와 가죽	298,831	20,882	0.869	1.139
47	목재펄프,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의 펄프, 지.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52,262	23,439	0.381	2.717
74	동과 그 제품	2,001,206	520,372	0.587	1.698
80	주석과 그 제품	22,779	3,699	0.721	1.379
85	전기기와 그 부분품	48,094,868	26,281,882	0.293	1.362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1,756,160	3,558,339	0.719	2.322

2) 현시비교열위지수(RCD)와 경쟁열위 품목군

현시비교열위(RCD: Revealed Comparative Disadvantage)는 특정품목의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특정국으로부터의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품목의 대 세계 수입이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함으로써 해당품목의 수입이 특정국에 집중된 정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7) 무역특화지수(TSI)가 한국 우위 품목($1 \geq TSI \geq 0.2$)이면서 현시비교우위지수(RCA)이 1 이상인 경우로, 이는 대 중국 수출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품목 가운데 해당 품목의 RCA지수 값이 1 이상일 경우로 해당품목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이다.⁸⁾ 이를 가지고 비교열위 여부를 분석해 본다.

한국무역협회의 HSK 2단위의 2013년도 대중국 수출입 Data를 이용하여 현시비교열위지수를 산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현시비교열위지수가 1이상인 비교열위 품목은 59개이고, 1보다 작은 비교우위는 38개 품목이다.

〈한·중 현시비교열위지수(RCD) 분석(2013년)〉

	품목 수(HS 2단위)	RCD	비고
비교 열위	59 품목	RCD ≥ 1	
비교 우위	38 품목	RCD < 1	
합 계	97 품목		

2013년도 한·중의 수출입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한 무역특화지수(TSI)와 현시비교열위지수(RCD)를 조합하여 경쟁열위 품목군을 분석⁹⁾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러한 품목군은 한중 FTA 발효시 수입증가로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바,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 상당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품목군으로 보인다.

〈대 중국 경쟁열위 품목군〉

(단위: 천 달러)

품목명(HS 2단위)	대중국 수출액	대중국 수입액	TSI	RCD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	289,747	864,117	-0.498	1.710
05 기타 동물성생산물	37,937	146,938	-0.590	2.379
06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11,219	28,069	-0.429	2.477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1,178	509,199	-0.995	4.371
12 채유용 종자,과실, 각종 종자,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51,016	342,979	-0.741	1.212

8) 현시비교열위가 1보다 크면 해당품목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1보다 작으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시비교열위 지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RCD = \frac{M_{ij}/M_i^t}{M_j^t/M^t}$$

여기서 M_{ij} = i국가로부터의 j품목 수입, M_i^t = i국가로부터의 총수입이고, M_j^t = j품목의 대세계 총수입, M^t = 대세계 총수입을 의미한다.

9) 무역특화지수(TSI)가 중국 우위 품목($-0.2 \geq TSI \geq -1$)이면서 현시비교열위지수(RCD)가 1 이상인 경우로, 이는 중국의 대 한국 수출우위품목 중에서 한국의 해당품목 수입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명(HS 2단위)		대중국 수출액	대중국 수입액	TSI	RCD
	짚, 사료식물				
13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5,682	50,595	-0.798	1,856
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39,704	134,002	-0.543	1,426
20	채소, 과일, 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33,040	313,204	-0.809	2,199
23	식품 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5,834	540,370	-0.979	1,422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74,741	319,365	-0.621	2,245
28	무기화합물, 귀금속, 희토류 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778,686	1,742,018	-0.382	1,827
31	비료	2,134	163,618	-0.974	1,601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	262	8,070	-0.937	1,118
42	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제품	86,989	800,510	-0.804	2,477
43	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6,197	116,463	-0.899	2,312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6,357	647,567	-0.981	1,400
45	코르크와 그 제품	23	780	-0.943	1,343
46	짚, 에스파르토,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지조세공물	398	18,967	-0.959	4,017
49	인쇄서적, 신문, 회화, 기타 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도면	7,939	59,030	-0.763	1,176
50	견	7,650	90,054	-0.843	5,640
51	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31,564	177,571	-0.698	3,279
52	면	191,014	425,997	-0.381	1,563
53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2,798	58,437	-0.909	4,330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28,997	52,158	-0.285	3,473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89,216	1,152,554	-0.856	3,198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및 뜨개질 물의 것은 제외)	285,319	2,221,856	-0.772	2,816
63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세트, 중고의류, 중고 방직용 섬유제품, 냅마	33,923	408,926	-0.847	3,780
64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134,163	1,118,014	-0.786	3,419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12,746	62,282	-0.660	4,010
66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549	81,475	-0.987	5,516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4,998	46,628	-0.806	4,315
68	석, 플라스틱,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112,923	760,845	-0.742	3,763

품목명(HS 2단위)		대중국 수출액	대중국 수입액	TSI	RCD
	제품				
69	도자제품	47,282	661,903	-0.867	3.408
70	유리와 유리제품	247,050	1,444,351	-0.708	2.583
72	철강	3,639,803	6,749,542	-0.299	2.057
73	철강의 제품	1,027,767	3,640,062	-0.560	2.654
81	기타 비금속, 세메트, 이들의 제품	86,902	385,846	-0.632	1.994
91	시계와 그 부분품	3,699	149,288	-0.952	1.477
92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5,609	66,385	-0.443	2.049
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541,897	1,397,211	-0.441	3.924
95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45,178	701,415	-0.879	3.106

4. 한·중 FTA의 통상정책적 측면

한·중 FTA는 한·미 FTA(2012)나 한·EU FTA(2011)에 비하여 관세철폐의 시간계획이 길고, 또한 관세 철폐율이 낮다. 그리고 중국은 사회주의적 경제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인 한국에 비해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중 FTA는 기존에 체결된 여타 FTA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교역의 21.43%를 차지하는 제1의 교역국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고 관세가 철폐됨으로 많은 산업군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제조업에 대한 피해대책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정비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한·미와 한·EU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체결된 한·중 FTA로 인한 산업 피해는 기존 FTA 피해와 함께 누적되어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였다. 단시일내에 많은 국가와의 동시다발적 FTA를 체결한 바, 이는 원산지 규정의 복잡화 문제뿐만 아니라 FTA의 국내적 수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못했던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1) 낮은 단계의 FTA와 의미

한·중 FTA의 관세 철폐율은 발효 10년차에 한국은 79.2%(9,690품목)이고, 중국은 71.3%(5,846

품목)이다. 발효 20년차에도 한국은 92.2%(11,272 품목)이고, 중국은 90.7%(7,428품목)이다. 이는 한·미 FTA(2012)나 한·EU FTA(2011)에 비하여 관세철폐 시간계획이 상당히 느리고 또한 관세 철폐율도 낮다.

한·미 FTA(2012)의 경우를 보면, 품목수 기준으로 발효 10년차에 한국은 98.3%(11,068품목)이고 미국은 99.2%(10,423 품목)이다. 한·EU FTA(2011)의 경우도 10년차에 한국은 98.1%(11,048 품목)이고 EU는 99.6%(9,803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또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양허제외 품목수를 비교해 보면, 한·중 FTA는 한국 6.8%(836 품목), 중국 7.8%(637 품목)인데, 한·미 FTA(2012)와 한·EU FTA(2011) 양허제외율은 0.1%(16 품목), 0.4%(한국 44품목, EU 39 품목)이다.

〈상품의 품목수 기준 양허수준 비교〉

(단위: 품목, %)

양허유형	한·중 FTA		한·미 FTA(2012)		한·EU FTA(2011)	
	한국	중국	한국	미국	한국	EU
	품목수(비중)	품목수(비중)	품목수(비중)	품목수(비중)	품목수(비중)	품목수(비중)
즉시철폐	6,108(49.9)	1,649(20.1)	9,061(80.5)	8,628(82.1)	9,195(81.7)	9,252(94.0)
5년 철폐	1,433(11.7)	1,679(20.5)	1,274(11.3)	1,116(10.6)	1,343(11.9)	551(5.6)
10년 철폐	2,149(17.6)	2,518(30.7)	733(6.5)	679(6.5)	510(4.5)	
(10년합계)	9,690(79.2)	5,846(71.3)	11,068(98.3)	10,423(99.2)	11,048(98.1)	9,803(99.6)
10년 초과	1,582(12.9)	1,582(19.3)	161(1.4)	82(0.8)	169(1.5)	
(20년 합계)	11,272(92.2)	7,428(90.7)	11,229(99.7)	10,505(100)	11,217(99.6)	
현행관세 +TRQ 등	124(1.0)		16(0.1)			
양허제외	836(6.8)	637(7.8)	16(0.1)		44(0.4)	39(0.4)
총 합계	12,232(100)	8,194(100)	11,261(100)	10,505(100)	11,261(100)	9,842(100)

* 자료: 관계부처합동.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2015. 3.), 「한·EU FTA 주요내용」(2010. 10.),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2011. 7.) 참조

이는 기존의 한·미 FTA(2012)나 한·EU FTA(2011)에 비해 매우 느리고 관세 철폐율이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낮은 단계의 FTA는 미국형이나 EU 형의 FTA에 익숙한 우리에게서는 낯설지만 미국형 이외의 또 다른 방식의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보인다.¹⁰⁾

FTA는 WTO 규범내에서 허용된다. GATT 제24조제8항에서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이란 여기에 참여하려는 WTO 회원국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을 “철폐”(eliminate)하는 것을 말한다. 규범에서의 “실질적인 모든 무역”과 관련하여 이를 교역량을 기준으로 주장 하는 입장과 질적인 기준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으나, 상당수 국가들은 일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하여 교역량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FTA는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는 10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GATT 제24조를 충족시킨다.

한·중 FTA도 GATT 제24조에 비추어 보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은 협상방식이다. 한·중 FTA의 협상 방식은 우선 합의되는 사항을 먼저 타결하고 미합의 부문은 차 후에 다시 논의하는 방식이었다. 즉 중국은 타국과의 FTA에서 일단 합의하기 쉬운 품목부터 타결하고(조기성과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 이후에 다른 이슈로 확대하는 전략을 써왔다.

한·중 FTA의 양허제외율은 한국 6.8%(836 품목), 중국 7.8%(637 품목)이다. 양국은 서로 간에 민간품목을 FTA에서 제외하였다. 서비스산업은 2단계 협상방식을 채택하여 우선 Positive 방식으로 타결하고, 2년 후 개시 예정인 후속협상은 Negative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방식과 낮은 단계의 FTA는 남북문제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과의 통일 특구 구상 등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가 제기된다.

UR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1994.12.16. 의결) 제6조에서는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이 협정에 의한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내부거래에 의한 남북한 간의 무관세 교역은 WTO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WTO 회원국의 최혜국대우는 북한은 WTO 회원국이 아닐지라도 WTO 비회원국에 부여한 대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10) 장경호, “한·중FTA 협상 경과에 대해”, 『시선집중 GS&J』 제186-1(2014.11.27.).

(2) 중국의 국유기업 문제¹⁾

중국은 한국과 달리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경제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인 조선, 전자, 화학, 석유화학, 자동차, 제철, 해상운송, 건설 등의 분야에도 중국의 국유기업이 포진되어 있고, 금융, 보험, 운송 및 통신 등 서비스산업도 국유기업 비중이 높다.

2012년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2011년 중국정부가 법적으로 제1주주의 자격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소유기업 수가 26만여 개 이다. 이는 전체 기업 수 733만개의 3.6% 수준이다. 2010년의 경우는 전체기업 수 651만여 개의 3.8% 수준인 24만 9천여 개가 국가소유이다.

〈소유형태별 중국 기업 수〉

(단위: 천 개, %)

		전체기업	소유형태					
			국가소유	공동소유	민간소유	홍콩, 마카오, 대만 소유	외국소유	기타
2011	법인수	7,331.2	261.9	270.1	5,792.1	95.4	103	808.6
	비중(%)	100	3.6	3.7	79.0	1.3	1.4	11.0
2010	법인수	6,517.7	249.6	269.6	5,126.4	89.7	98.4	684
	비중(%)	100	3.8	4.1	1.4	1.4	1.5	10.5

* 자료: 중국 국가 통계국, 「중국통계연감」, 2011, 2012., 송영관 외, p. 21에서 재인용

한편, 2011년 제조업 분야의 국유기업 수는 총 1만7천개로 민간기업 18만여 개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산업총생산은 각각 22조 위안과 25조 위안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총자산은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각각 28조 위안과 12.7조 위안 규모로 국유기업의 총자산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자산수익율의 경우는 민간기업이 22.4%로 국유기업의 13.69%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11) 송영관 외, 「중국 국유기업과 한중 FTA」 (한국개발연구원, 2012)에서 인용

〈제조업 분야 국가출자기업과 민간기업 비교(2011년)〉

(단위: 백만 위안, %)

	기업 수	총생산	총자산	부채비율 (부채/자산)	자산수익률
국유기업	17,052	221,036.25	281,673.87	61.17	13.69
민간기업	180,612	252,325.74	127,749.86	54.59	22.45

* 주: 1) 국가출자기업은 국가소유(state holding), 국유(state owned) 기업 모두를 포함함.

2) 자산수익률은 (이윤+세금+이자비용)/평균자산으로 정의함.

* 자료: 송영관 외. p. 30에서 재인용

중국의 국유기업이 한·중 FTA에 야기하는 통상규범적 문제점은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효과의 축소와 양국 동종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중국에서 국유기업이 정부조달에 포함되어 함께 개방되지 않고 민간부분만 개방된다면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개방효과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한·중 FTA 협정문에는 정부조달 내용을 제17장 경제협력에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조달의 구체적 의무사항 및 양허안을 규정하지 않고, 중국이 WTO GPA 가입 시 정부조달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17.17조).¹²⁾

한편 중국의 국유기업은 동종의 한국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국유기업은 성격상 경영위기 시 국가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독과점 국유기업은 막강한 시장독점력을 토대로 시장의 공정경쟁질서에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왜냐면 국유기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상품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특정상품을 대량 구매함으로써 가격을 왜곡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 협정문에는 제14장(경쟁)에서 경쟁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기업 및 특별 또는 배타적 권리를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기업에 대해 경쟁법 원칙에 반하는 조치를 채택해서는 안 되며, 양국은 그러한 기업들이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5조제3항). 그런데 단서로 “경쟁법 적용이 공기업 등의 임무 수행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경쟁법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다”고 또한 규정하고 있다(제14.5조제3항나호후단).¹³⁾ 그리

12) 제17.17조(추가 교섭) 양 당사국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각 당사국 간 정부조달 협정을 맺기 위하여,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교섭이 완료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조달 관련 교섭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13) 제14.5조(경쟁법의 적용)

1. 이 장은 각 당사국의 모든 사업자에 적용된다.

2. 이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기업에 특별한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하거나, 또는 그러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고 “제14장(경쟁)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특별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5조제2항).

(3) 한·중 FTA 피해대책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 정비

한·중 FTA는 관세철폐의 시간계획이 길고, 또한 관세 철폐율이 낮다. 민감품목은 긴 시간계획 또는 양허제외로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제1의 교역국이고 지리적으로도 가깝다.

더구나 우리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의거 선진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중 FTA로 인하여 경쟁력이 없는 산업군이 입는 피해는 기존 FTA와 함께 누적되어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FTA라는 국가의 정책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를 먼저 정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제조업에 대한 이 제도가 무역조정지원제도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을 위한 용자컨설팅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먼저 도입·시행되었다.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는 1962년에 도입, 2002년 NAFTA-TAA와 통합하면서 지원규모가 확대된 후, 2009년에 금융위기로 더욱 확대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2011년 10월 한·미 FTA 이행법에도 계속 반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07년부터 도입하였으나, 그 지정요건과 지원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실효성 없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였다. 그러다가 2011년 12월 한·미 FTA의 피해대책 법안으로 피해요건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일부 서비스업도 포함되게 보완되었다.

2008년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무역조정지원 기업실적을 살펴보면,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65개사이다. 이 실적도 주로 2013년과 2014년에 지정된 수치이다. 무역조정 기업지정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로는 지정요건이 매출액 또는 피해기준이 10% 이상이고, 또 피해가 FTA 상대국이라는 입증의 까다로움이라는 지적이 있다.

3. 공기업과 특별한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 받은 기업에 대하여,

- 가. 어떠한 당사국도 제14.2조에 포함된 원칙에 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나. 양 당사국은 그러한 기업들이 제14.3조에 규정된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 및 경쟁법의 적용이 그 기업에 맡겨진 특정 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한다.

〈무역조정지원 지정 기업 현황〉

(단위: 건)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합계
지 정	2	3	2	0	8	24	26	65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은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용자컨설팅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 전에 지원을 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의하면, 피해기업이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①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고, ② 심각한 피해의 주된 원인이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며, ③ 해당 기업이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무역조정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신청서에 심각한 피해 발생 사실과 그 주된 원인이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기업이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당해 기업에 발생한 심각한 피해의 주된 원인이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더더구나 곤란할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피해기업의 영향은 여러 FTA로부터 연유하여 누적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 TAA는 상무부 경제발전청(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이 주관하며,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된 11개의 무역조정 지원센터(TAAC: Trade Adjustment Assistance Center)¹⁴⁾를 통해 지원하는데, 동 센터의 기본적인 업무는 ① TAA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기업을 구분·확인, ② 기업의 TAA 참여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작성 지원, ③ 기업의 경영성과 회복을 위한 조정계획(adjustment plan) 개발, ④ 조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지원 제공 등이다.

우리나라도 무역조정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동 센터가 무역조정지원 기업지정 신청서의 작성, 무역조정계획의 수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4) TAAC는 비정부 기구로서 민간 컨설팅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운영된다.

(4) 한·중 FTA의 국내적 수용과 국내제도 정비

한·중 FTA의 국내법적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국내적 수용 절차가 필요하다. 국내적 수용 방식은 국가별로 법체계에 따라 다른 바, 국내법적 효력을 바로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법 제정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회의 비준동의¹⁵⁾에 의해 한·중 FTA 협정문이 바로 우리 법체계에 들어온다. 이때 FTA 협정문은 헌법 제6조제1항¹⁶⁾에 의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반면에 미국¹⁷⁾, EU와 같이 모든 조약의 즉각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체계에서는 조약체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행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한다.¹⁸⁾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약의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이 이행법에¹⁹⁾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친 조약은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FTA 협정문과 상충되는 국내 법률을 FTA 협정문에 일치시키는 작업이 수반된다. 한·EU FTA(2011)의 경우 관세법, 공인회계사법 등 14개의 법률안이 한·EU FTA 비준동의와 함께 개정되었고, 한·미 FTA(2012)의 경우는 개별소비세법, 저작권법 등 24개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법안의 개정 내용은 FTA 상대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의 제거 차원에서

15)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6) 헌법 제6조 ① 헌법절차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통상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7) 미국은 헌법절차에 의하여 체결되는 조약(상원 2/3 이상의 사전 동의)은 헌법 및 법률과 함께 미국의 최고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약의 자기집행성(self-executing) 여부를 기준으로 절차를 달리 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기집행조약은 연방헌법절차에 의해 체결되는 조약을 의미한다. 미국은 통상적으로 국제통상협정에는 자기집행력(self-executing)을 가진 조약의 성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미국은 국제통상협정을 승인함에 있어서 헌법규정과는 다른 선택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왔다. 즉, 상원의 승인 하에 체결되는 조약(treaty)과 그렇지 않은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s)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다. 국제법상으로는 이들은 다 같은 조약이지만, 미국의 국내법체계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즉 국내법이 행정협정에는 우선하고 있다. 행정협정이 승인되는 한 가지 방법이 의회가 국제협정을 수용하는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동 행정협정을 승인하는 방법이다. NAFTA, WTO 등 다수의 통상협정이 이러한 방법으로 승인되었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이다.

18) 강인수외, 국제통상론, 박영사, 2004, pp.455-459 참조.

19) 미국의 1994년 UR협정이행법에서는 WTO 협정의 어느 규정도 미국법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제102조(a)(1), 그리고 1974년 통상법 제301조를 제한하지 않는다(제102조(a)(2)(B))고 규정하고 있으며, EU의 1995년 통상장벽규칙(TBR)에서도 미국이 통상법 301조와 유사한 역외국가의 불공정 통상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적 통상규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각각 반영된 내용들이다. 그러므로 효력은 FTA 당사국끼리만 향유되어야 하므로, FTA 당사국 이외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FTA 당사국만 혜택을 향유하는 특례형식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FTA 수용 시 이러한 측면을 간과하고 일반법 형식으로 개정함으로써 내국민 대우에 의거 의도하지 않은 무임승차국을 낳았다고 보인다. 또한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국내제도의 변동도 차곡차곡 누적화 되는 형국이 발생하였다.

한편,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는 GATT나 GATS(서비스무역협정)와 달리 WTO 출범(1995년) 이후의 FTA에 대하여 최혜국대우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TRIPs 제4조)²⁰⁾. 다만 FTA 규정내용이 TRIPs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범주를 벗어나는 새로운 내용이면 이는 TRIPs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²¹⁾ 그러므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FTA에서의 TRIPs+ 합의는 FTA 당사국에만 적용될 수 없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국내제도 정비는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중 FTA에서 방송보호기간 50년은²²⁾ TRIPs의 20년 보다 보호기간이 확장되었는 바, 이 경우는 FTA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여타 WTO 회원국에도 향유시켜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5) 동시다발적 FTA와 한·중 FTA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2004년 칠레, 2006년 싱가포르 및 EFTA(4국), 2007년 ASEAN(2009년 서비스협정)과 체결하였고, 2010년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

20) TRIPs 제4조(최혜국대우)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 일방 회원국에 의해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일방 회원국에 의해 부여되는 다음 경우의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동 의무에서 제외된다.

- (a) 일반적 성격을 가지면서 특별히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법공조 또는 법 집행에 관한 국제협정에서 비롯되는 경우
- (b) 내국민대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부여되는 대우에 따라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로마협약 또는 베른협약(1971년)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경우
- (c) 이 협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실연가,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권리에 관한 경우
- (d)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효된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국제협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 단, 이러한 협정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이사회에 통보되어야 하며 다른 회원국 국민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1) Carlos M. Correa,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xford, 2007, pp. 65-72 참조

22) 제15.6조(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 3. 각 당사국은 방송의 보호기간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해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50년 미만인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규정한다.

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그리고 2011년 EU(28국) 및 페루, 2012년 미국, 2013년 터키, 2014년 호주, 2015년 1월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였다. 한편 2013년 콜롬비아, 2015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는 FTA 협정을 타결하였고, 2015년 터키와는 서비스·투자협정을 타결하였다.

그리고 한중일 FTA와 RCEP를 진행하고 있으며, 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2015년 4월 30일 “신FTA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추진전략의 내용에는 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Mega) FTA에의 적극적인 대응, ② 기체결 FTA의 개선, ③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의의〉

(2015. 5. 현재)

진행 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11건, 50국)	칠레	'99. 12. 협상개시, '04. 4.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04. 1. 협상개시, '06. 3.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4개국)	'05. 1. 협상개시, '06. 9.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10개국)	'05. 2. 협상개시, '07. 6. 상품무역협정 발효, '09. 5. 서비스협정 발효, '09. 9. 투자협정 발효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2011년 기준)
	인도	'06. 3. 협상개시, '10. 1.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EU (28국)	'07. 5. 협상 개시, '10. 10. 서명, '11. 5. 비준동의안 국회 의결, '11. 7. 1. 잠정발효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페루	'09. 3. 협상개시, '11. 8.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교두보
	미국	'06. 6. 협상개시, '07. 6. 협정서명, '10. 12. 추가협상타결, '11. 10. 22. “한·미 FTA 이행법” 미 상·하원 통과, '11. 11. 22.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한국 국회 의결, '12. 3. 15.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08. 6. ~'09. 5. 공동연구, '13. 5. 1. 발효	유럽·중아시아 진출 교두보
	호주	'09. 5. 협상개시, '14. 12. 12. 발효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05. 7. 협상개시, 2015. 1. 1. 발효	북미 선진시장
타결 (5국)	콜롬비아	'09. 3. ~'9. 민간공동연구, '13. 2. 21. 정식서명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터키(서비스·투자협정)	'13. 8. ~'14. 7. 서비스·투자협정 총 4차례 공식협상, '15. 2. 26. 서비스 투자협정 정식서명	유럽·중양아 진출 교두보

진행 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중국	'07. 3.~'10. 5.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민감분야 처리를 위한 실무협약, '12. 5. 2. 협상개시, '15.2.25 가서명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13년 기준)
	뉴질랜드	'07. 2.~'08. 3. 민간공동연구, '15. 3. 23 정식서명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11. 11.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12. 8. 6. 협상개시, '15. 03. 28 가서명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 ('14.12월 기준)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확산과 관련하여 일찍이 Baldwin(1993)²³⁾은 “도미노 효과”(domino effect)를, Bhagwati, Greenaway and Panagariya(1998)²⁴⁾ 및 Panagariya(1999)²⁵⁾는 “스파게티 볼 현상”(spaghetti bowl phenomenon)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지역무역협정이 도미노 효과로 확산되다가, 어느 순간 협정의 중첩 얽힘으로 인하여 확산이 저지된다는 것이다.

FTA가 확산됨으로 인하여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을 위한 행정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원산지 증명의 복잡성은 FTA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2013년 기준으로 FTA 수출입 활용율은 대미국의 경우 수출은 76.1%, 수입은 67.3%이고, 대EU의 경우 수출은 80.8%이고, 수입은 67.8%이다.

〈FTA 수출입 활용률〉

(단위: %)

FTA체결국	'12년(A)		'13년(B)		증감폭(B-A)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칠레	75.2	97.9	78.8	98.5	3.6	0.6
EFTA	79.8	61.9	80.0	41.4	0.2	△20.5
아세안	37.7	73.8	38.7	75.6	1.0	1.8
인도	36.2	52.7	42.9	61.0	6.7	8.3
EU	81.4	66.8	80.8	67.8	△0.6	1.0
페루	78.0	92.0	91.8	97.9	13.8	5.9

23) Richard E. Baldwin, “A Domino Theory of Regionalism,” NBER Working Paper 4465(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3)

24) Jagdish N. Bhagwati, David Greenaway and Arvind Panagariya, “Trading Preferentially: Theory and Policy,” *The Economic Journal* 108(1998), pp. 1128–1148.

25) Arvind Panagariya, “The Regionalism Debate: An Overview,” *The World Economy* 22(1999), pp. 477–511.

FTA체결국	'12년(A)		'13년(B)		증감폭(B-A)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미국	68.9	61	76.1	67.3	7.2	6.3
터키	-	-	70.0	69.0	-	-
FTA 전체	62.7	67.0	66.9	69.0	4.2	2.0

* FTA 수입활용률 = 특혜관세 적용신고 수입/FTA 혜택품목의 수입

FTA 수출활용률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FTA 혜택품목의 수출 (FTA상대국과 주요품목의 HS연계로 FTA혜택비혜택 구분으로 추정)

*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2014.2.25.)

WTO 차원에서는 원산지규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원산지규범은 없다. 다만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은 앞으로 통일원산지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을 위한 향후 일정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FTA에 있어서는 원산지규정은 FTA에 의한 특혜대우가 역외국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FTA는 특혜관세의 적용과 제3국을 우회한 수출입 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원산지 증명방식과 검증방식을 함께 협정문에 필수적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중개방식에 의한 교역은 차단된다.

그런데 FTA에 있어서도 아직 표준적인 원산지규정이 없다. 원산지규정은 FTA마다 각각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결국 각각의 FTA 특혜관세 향유를 위해서는 각각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을 위한 행정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FTA 활용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FTA의 확산과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함께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중첩적 FTA로 FTA “허브”(hub)가 아닌 “스포크 함정”(spoke trap)²⁶⁾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26) Richard E. Baldwin, “The Spoke Trap: Hub and Spoke Bilateralism in East Asia”, Barry Eichengreen, Yung Chul Park and Charles Wyplosz, *China, Asia and the New World Economy*(Oxford Univ. Press, 2008)

5. 맺으며

우리는 주로 FTA의 효과에 대하여 거시적 양극화 논쟁을 하였다. 그러나 FTA의 효과는 이렇게 양극단으로 재단되지 않는다. 양허되는 품목 하나하나가 비교우위의 특화개념으로 영향을 받는다. 사실상 FTA의 효과는 무역창출이라는 양(+)의 효과와 무역전환이라는 음(-)의 효과가 혼재된다. 이에 FTA 효과에 대한 논쟁은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경쟁우위품목군은 지원책을 강구하고, 경쟁열위 품목군에 대해서는 피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중 FTA 체결로 미국식의 개방폭이 높은 FTA와 중국식의 개방폭이 낮은 FTA를 동시에 체결하였다. 한·중 FTA는 기존에 체결된 FTA에 비해 관세철폐의 시간계획이 길고, 관세 철폐율이 낮으며, 또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사회주의 경제체제와의 FTA 협정이다. 국유기업의 문제는 FTA의 효과를 경감시킬 것이며 동종기업간의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3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된 선진경제권과의 FTA 환경에서, 이번에 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전체교역의 21.43%를 차지하는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의도하지 않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는 FTA의 발효가 누적·중첩됨으로써 부정적 측면을 증폭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한·중 FTA에 대한 피해대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실질적인 피해대책으로 작용하게 피해요건을 낮추고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의 제도적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첩적 FTA는 원산지 규정에 맞추기 위하여 기업에 많은 행정비용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중첩적 FTA로 스포크 함정(spoke trap)에 빠지지 않는 지를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